올바른 노동문화 정착을 위한 대토론회

건강한 노조를 위한 첫걸음은 회계투명성

2023년 6월 8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주최 : 국회의원 **서범수**

주관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후원 : 대한전문건설협회

목차

올바른 노동문화 정착을 위한 대토론회

건강한 노조를 위한 첫걸음은 회계투명성

인사말

서범수 | 국회의원

환영사

윤학수 |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
김희수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

축사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정재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좌장

이복남 | 서울대학교 교수

피해사례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결과 발표」 23
'선' 넘는 건설노조, 올바른 노동문화 방향

발제

「건설노조 불법행위 대응과 회계투명성 강화 필요성」 33
박광배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

권창준 |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51
김상문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59
김환주 |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영정책본부장 63
윤성만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73
최지광 | 한길회계법인 대표회계사 79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울산 울주 국회의원 서범수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올바른 노동문화 정착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내 · 외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오늘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 주신 대한전문건설협회 윤학수 회장님과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김희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3년 3월 9일 경찰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 3개월 간 금품갈취 2,153명, 업무방해 302명, 폭력행위 107명, 채용 · 장비사용 강요 284명 등 총 2,863명이 단속되었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가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단속은커녕 노동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크게 늘렸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에는 29억2500만원에서 집권을 시작한 2017년 37억1600만원, 2019년 49억16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늘려왔습니다. 국고보조금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회계검증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회비는 일반기부금으로 분류되어 세제 혜택을 받고 있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회비는 일반기부금으로 분류되어 세제 혜택을 받고 있지만, 공시 의무가 없어 회계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만, 공시 의무가 없어 회계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에는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2017년에는 한국노총 87만2000명, 민주노총 71만1000명에서 5년 뒤인 2021년에는 한국노총 123만8000명(↑41.97%), 민주노총 121만3000명(↑70.60%)으로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언론매체 데일리안이 3월 2일에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조 회계장부 공개'에 찬성한다 63.3%, 반대한다 28.9% 였으며, 5월 2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취업자 1,000명 대상 응답자 중 '다른 기부금 단체처럼 노조도 회계를 공시해야 한다'88.3%, '불필요하다'11.7%로 다수의 국민들께서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는 정부와 국회에서도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를 막고,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지난 5월 24일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결산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 모이신 각계 전문가분들께서 올바른 노동문화 정착과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을 위한 활발한 토론과 대안 제시, 제도적 보완 방안을 도출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위해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도출된 제도적 보완 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8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서범수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5만여 전문건설사를 대변하고, 200만 건설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시공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 윤학수 입니다.

먼저, 바쁘신 국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의 올바른 노동문화 정착에 힘써 주시고 우리업계 발전을 위해 귀한 토론회를 주최하여 주신 서범수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국민의 힘」김기현 대표님과 윤재옥 원내대표님, 박대출 정책위 의장님, 그리고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토론회를 함께 주관하여 준비해 주신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김희수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주제발표를 맡아주신 박광배 선임연구위원님, 토론회 좌장을 맡아주신 이복남 교수님을 비롯해서 의견을 발표해주실 토론자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잠시 바쁜 생업을 내려 놓으시고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건설현장'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전문건설 회원사 및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올바른 노동문화 정착을 위한 토론회"가 산업계, 학계, 정부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본 토론회는 지난해, 대통령께서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는 국정목표와 함께 2023년 경제정책 3대 개혁 중 최우선 과제로 노동개혁을 추진해 오셨던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0월부터 건설노조의 불법 · 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업계, 국회, 정부가 연계하여 민 · 당 · 정 협의를 통해 건설노조의 불법사례

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한 결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금년 2월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마련과, 5월에는'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 마련으로 그 동안 일부 노조의 불법집회, 채용강요, 부당금품 요구 등이 크게 줄어들고 있어 우리 건설업계는 이번 정부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건설산업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 대부분의 건설근로자들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올바른 노동활동을 하고 계시며, 우리 사업주 입장에서도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충분히 인정하며 노 · 사 간의 상생 또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 노동조합에서 국가 보조금을 지원받음에도 불구하고 불투명한 운영과 불법적인 관행으로 다른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의 노동권이 침해되고 자주적인 노조 운영과 발전이 저해된다면, 노동조합이 자신의 조합원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입히고 올바른 노사관계 발전도 저해될 것입니다.

본 토론회 이후엔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노조의 불법행위 예방과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차원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특권층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통한 올바른 노동문화를 확대해 나가는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조치로 업계를 대신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야당의 협조도 필요할 것이며, 정부의 지원도 필요할 것입니다.

유례없는 코로나19로 인한 장기간의 건설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인건비 급등으로 대내 · 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건설업계가 노동조합의 불법 · 부당행위로 인한 고통과 눈물을 멈추지 못한다면 노 · 사간의 상생과 동반성장은 요원(遙遠)할 것입니다.

오늘 이 토론회도 그 동안에 건설현장의 고질적 병폐인 노조의 불법 · 부당행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에 우리 서범수 의원님을 중심으로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통해 올바른 노동문화를 정착하고 공정하고 상식이 바로 선 건설현장을 세우는 것이야 말로 노사간의 상생 및 동반성장의 표본이 되리라 봅니다.

모쪼록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노사의 상생문화가 기업의 경영문화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토론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애쓰신「국민의 힘」과 정부 등 당 · 정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8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 윤학수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 김희수입니다.

정부의 '노동개혁' 드라이브에 발맞춰 올바른 노동문화 정착을 위한 대토론회에 함께 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뜻깊고 중요한 토론회를 마련해주신 서범수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토론회 개최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김기현 국민의 힘 대표님과 윤재옥 원내대표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토론회의 개최를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주신 대한전문건설협회 윤학수 회장님과 회원사 및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주제발표를 준비하느라 애써주신 박광배 박사님, 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신 이복남 교수님, 그리고 패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노동개혁이 미래 세대인 청년과 국민을 위해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노동개혁으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초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결과, 월례비 요구와 노조전임비 강요 등 부당금품 수취가 전체 불법행위의 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당행위로 인한 공사지연 등으로 발생한 피해액이 1개 업체에서 많게는 50억 원까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노사가 상생 · 연대하는 노동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하고 신뢰하는 문화가 시급히 정착되어야 하며,
그 출발점은 현장의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직도 일부 건설현장에서는 불법적인 행태가 되풀이되고 불법을 방치하는 관행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노사가 상생 · 연대하는 노동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하고 신뢰하는 문화가 시급히 정착되어야 하며, 그 출발점은 현장의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지난달, 「건설현장 불법 · 부당행위 근절대책」 발표에 이어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하고 일관된 법 집행과 상시 단속체계 가동을 위한 제도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오는 9월부터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회계를 공시한 노동조합에 한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과하는 등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발표와 함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건설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에 대해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이 올바른 노동문화 정착과 건설산업의 선진화에 귀중한 밑거름이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 대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서범수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8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 김희수

축사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표 김기현입니다.

우선 〈올바른 노동문화 정착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뜻깊은 토론의 장을 열어주신 서범수 의원님과 함께 준비해주신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건설 산업 분야의 노동개혁 및 노동문화 개선,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에서 지난 9월을 기점으로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운영하며, 국고의 보조를 받는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계 결산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담함으로써 이를 회피할 수 있는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가 노동 개혁에 있어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부 기조를 노조 탄압으로 규정짓는 일부 노조의 반발과 극렬한 시위로 인해 국민들이 일상 속 불편함을 겪고 계신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오늘 마련된 시의적절한 토론의 자리를 통해
노동법 및 시행령 등 현행 제도를 면밀히 검토하고,
노조로의 국고보조금 지원과 관리에 대한 여러분의 고견을
적극 제안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오늘 마련된 시의적절한 토론의 자리를 통해 노동법 및 시행령 등 현행 제도를 면밀히 검토하고, 노조로의 국고보조금 지원과 관리에 대한 여러분의 고견을 적극 제안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저와 국민의힘은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올바른 노동문화의 정착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개혁 기조에 최선의 조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미 있는 정책토론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참석해주신 모든 귀빈 분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8일
국민의힘 대표 김기현

축사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입니다.

「올바른 노동문화 정착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서범수 의원님과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관계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참석해 주신 전문가와 내빈 여러분께도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단체이나, 그동안 잦은 불법 집회시위와 불투명한 회계로 사회경제적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근절과 노동문화 개선을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10년간 정부는 노조에 한국노총, 민주노총, 미가맹노조 등에 346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회계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는 문제가 이어져 왔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노조가 회계장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응답이 압도적 다수로 나타나고 있는 것만 봐도 노동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뜻은 분명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노조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이번 토론회는 매우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MZ세대 노조', '제3의 노조'의 등장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의 노동조합들은 지금까지

'MZ세대 노조', '제3의 노조'의 등장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의 노동조합들은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대를 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대를 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노동조합의 누적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올바른 노동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현명한 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저 또한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올바른 노동문화 정착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참석해 주신 모든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8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

축사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박대출입니다.

먼저, 「올바른 노동문화 정착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의적절하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서범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건강한 노동문화를 향한 첫걸음으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고견을 나누기 위해, 바쁘신 와중에도 소중한 발걸음 해주신 발제자 및 토론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을 개혁추진의 원년으로 삼고, 불법행위가 난무했던 노사관계에 법치주의를 확립하고자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노동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난 10년간 노동조합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이 346억원에 달하는 데 반해, 회계감사와 관련한 제도가 부재하여 그간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2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회계장부 공개에 찬성하는 응답이 63.3%로 이미 과반수를 넘었고,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취

지난 2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회계장부 공개에 찬성하는 응답이 63.3%로 이미 과반수를 넘었고,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취업자 10명 중 9명이 노동조합 회계 공시에 찬성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업자 10명 중 9명이 노동조합 회계 공시에 찬성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처럼 앞으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디 오늘 토론회에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방안들이 제시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올바른 노동문화 정착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오늘 자리에 귀한 발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8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박대출

축사

안녕하십니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정재 국회의원입니다.

올바른 노동문화 정착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울산 울주군 서범수 국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토론회 준비를 위해 힘써주신 대한건설정책연구원과 대한전문건설협회의 모든 관계자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올바른 노동문화 정책을 위한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근절'입니다. 지난 5년간 전 정부의 친노조 정책으로 인해 노조 조합원의 숫자는 2017년 208만 명에서 2020년 280만 명으로 3년간 72만 명이나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건설 현장 집회 · 시위도 2016년 2,589건에서 2020년 13,128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난 1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건설 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1,494곳 건설 현장 290개 업체에서 조사된 불법행위는 총 2,070건으로 최근 3년간 발생한 피해액만 1,686억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공사 지연, 공사비 상승 같은 명목으로 결국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2월 고용노동부가 조합원 1,000명 이상 노동조합 및 연합단체 327개에 노조법 14조에 따라 요구한 재정 서류 비치 · 보존 의무 준수 확인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63%에 해당하는 207곳이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조합원의 열람권 보장,
회계 감사 사유 확대,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 등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수 조합원에게 조합비를 걷고 정부 · 지자체로부터 최근 5년간 1,520억 원의 지원금까지 받은 노조의 회계 투명성은 조합원과 국민에 대한 의무지만 대형노조들은 이런 당연한 법적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고 저항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조합원의 열람권 보장, 회계 감사 사유 확대,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 등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건설 현장 불법 · 부당행위 근절대책 발표하는 등 건설 현장 내 진정한 노사법치 확립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직접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 현장에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불법과 폭력이 근절되어야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정상적인 대화와 타협의 장이 바로 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회가 올바른 노동문화 정착을 위해 노조의 회계 투명성이 강화되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공유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그간 탈법적 일탈을 관행으로 여겨왔던 일부 노동조합에 대해 다수의 선량한 노동자가 보호받을 수 있고 법치주의와 공권력을 비웃으며 폭력을 일삼고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건설노조의 폭력 행위를 뿌리 뽑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정재

축사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입니다.

건설산업을 비롯한 산업 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노동문화 정착을 위한 뜻깊은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신 서범수 의원님, 올바른 노동문화 정착 방안을 함께 논의해주실 전문가 여러분과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동개혁은 미래 세대와 국민의 일자리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정부는 성공적인 노동 개혁을 위하여 진정한 노사법치주의 확립에 힘쓰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설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지난 2월 21일, 건설현장 불법 · 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건설현장 울타리 내에서 암암리에 발생하던 불법 · 부당행위에 대한 행정적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근로자 보호와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점검과 단속을 지속해온 결과, 채용 강요나 부당금품 수수 등의 불법행위가 확연하게 줄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정책기조의 시스템화,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우려가 여전히 있어 5월 11일, 후속 조치로 당 · 정이 함께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 개정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제도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노동조합 등 노동단체가
스스로의 회계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등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면
진정한 노사법치주의가 실현될 날도 머지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를 도입하고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 시스템 의무화를 확대하는 등 건설근로자의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한 방침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더해 노사 양측의 노력도 필수입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노동조합 등 노동단체가 스스로의 회계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등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면 진정한 노사법치주의가 실현될 날도 머지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도 불합리한 노동 관행 개선을 위하여 지난 3월부터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의 불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경찰청의 200일 특별단속도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6월까지 시행 중입니다. 윤석열정부는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범부처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을 이어갈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건설현장의 부당이득을 진짜 건설노동자와 무주택 서민을 비롯한 일반 국민에게 되돌려 드리고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노력과 의지가 계속해서 더 좋은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에 참석하신 전문가 여러분께서 노조 스스로 회계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조합원에 의한 자율적인 통제기제가 잘 작동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여러분의 의견을 주의 깊게 경청하고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앞으로도 노동개혁의 성공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8일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축사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올바른 노동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이번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서범수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김희수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각계 전문가 여러분과 함께하신 내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인구절벽, 새로운 국제질서 등 우리 경제는 전환적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노동시장의 의식 · 관행 ·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기 버거울 만큼 시대에 뒤처진 채 머물러 있습니다.

그 영향과 피해는 미래세대와 노동시장의 약자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고, 대처가 늦을수록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 국민을 위해 상생과 연대를 강화하는 노동개혁이 절실합니다. 더 이상은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을 미룰 수 없습니다.

노동개혁 중에서도 노사법치의 확립은 '법은 모두가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약속'이라는 상식에 기반한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이러한 노사법치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회계도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노동조합 운영상 자율성과 민주성 또한 투명한 회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2011년 복수노조 제도 도입 이후 불거진 노동조합 간 노동3권 침해행위는 여전히 입법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고, 산업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 방해 행위 등을 규율하기 위한 수단도 부족합니다.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산업현장에서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해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대립적 노사문화에서 벗어나 합리적 노사관계로 나아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노동관행개선 전문가 자문회의 논의 등을 거쳐 노동조합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조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조합 운영 공시 제도'를 도입하고,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직업적 관련성 있는 자로 제한하는 등 노동조합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폭행 · 협박 등을 통한 노조 탈퇴 방해" 등 노동3권 침해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며 업무거부" 등 사용자에 대한 권리침해 행위도 금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건설현장에서도 반칙과 특권을 뿌리 뽑아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하고 합리적 노사관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산업현장에서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해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대립적 노사문화에서 벗어나 합리적 노사관계로 나아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조합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보다 효과적으로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고민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자리인 만큼 우리나라의 올바른 노동문화 정착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정부는 제시해 주실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노동시장을 향한 비전과 과제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서범수 의원님과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8일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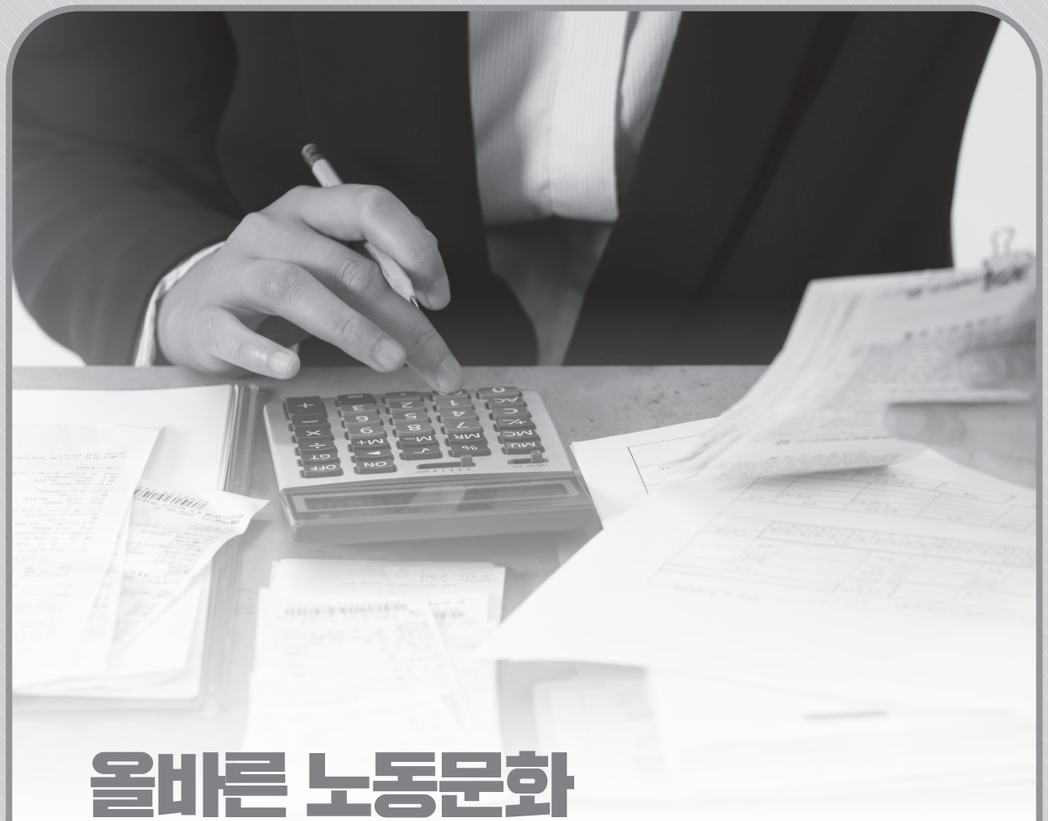

올바른 노동문화 정착을 위한 대토론회

건강한 노조를 위한 첫걸음은 회계투명성

피해사례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결과 발표

'선' 넘는 건설노조, 올바른 노동문화 방향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3. 6. 8

전문건설,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결과

목 적

-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 3대 개혁 중 최우선 과제로 노동개혁을 추진
- 이의 일환으로 국토부를 중심으로 범 정부차원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대책 ' 마련
- 정부의 원활한 정책 추진을 지원하고자 건설현장 불법행위 실태조사 지원과 함께 국민의힘 정책위 중심의 민·당·정 협의 및 민·관 협의체 참여

전문건설,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결과

추진경과

- 우리협회는 국토부에서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지난 1월 13일까지 건설분야 유관단체 등을 통해 진행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 실태조사'를 포함하여 총 5차례 실태를 파악

  ✓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의 미온적 대처와 건설사업자들이 보복 등을 우려하여 신고가 다소 저조

  ✓ 그럼에도 총 95개 사업자, 397개 현장에서 피해사례를 접수 받아 집계

전문건설,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결과

조사결과

< 지역별 분류>

수도권	강원권	대전세종충청권
95 (24%)	5 (1%)	7 (2%)
광주전라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16 (4%)	9 (2%)	265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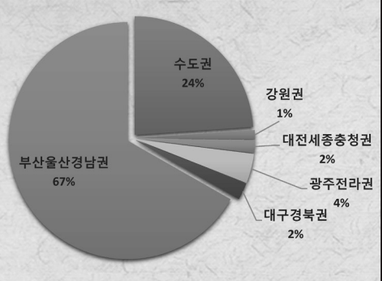

-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지역별로는 수도권 95건, 부·울·경 265건으로 해당 권역의 피해가 약 91%로 많은 피해사례가 집중

  ※ 대·경 9건, 광·전 16건, 대·세·충 7건, 강원 5건 순

전문건설,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결과

조사결과

< 불법 유형별 분류>

채용강요	장비사용강요	타워월례비	전임비 등 강요	기타 금품 요구
121 (16%)	106 (14%)	225 (29.8%)	100 (13.2%)	3 (0.4%)
현장퇴거 불응	출입방해	임의추가 인력투입	레미콘 운송거부	태업
69 (9.1%)	75 (9.9%)	5 (0.7%)	1 (0.1%)	51 (6.7%)

- 타워 월례비 요구가 225건으로 29.8%를 차지하고 불법 전임비 요구가 100건으로 약 13.2%로 뒤를 이어 부당금품 강요가 전체 불법행위 총 756건의 약 43.4%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
- 그 외, 채용강요 121건, 장비사용 강요 106건 순으로 유형별 피해 건수 집계
- (피해현황) 아울러 실태조사 시 피해 현황도 함께 파악
  - ✓(피 해 액) 1개 사업자가 적게는 5백만원에서 많게는 최대 80억원까지 추가비용 발생
  - ✓(공기지연) 최소 7일에서 많게는 최대 180일 지연 사례 발생한 것으로 파악

공공공사 현장 실제 피해사례

공공공사 현장 실제 피해사례

공사현황

- 공사명 : ○○ A18BL 아파트 건설공사
  ※ 공사진행률 : 약 90%
- 업체명 : 하도급사 ▲▲개발, 원도급사 □ □ □ 건설

피해현황

- 해당 현장에 A노조가 먼저 들어온 상황에서 B노조가 들어와서 A노조원을 모두 빼고 자기 조합원 채용강요
- 경미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관공서에 고소·고발 협박
  * 현장개설 시점에 업무과중으로 근로계약서를 공사시작 전 미 교부
  - 결국, 고발 하지 않는 조건으로 B노조원 채용 및 노조가 요구하는 소위 노조계약서 작성·사용
  ※ 사업주의 근로자 고용 권한 및 계약서 사용 권한 등 박탈

공공공사 현장 실제 피해사례

피해현황

- 지하층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현장을 나가지 않고 공사 방해
  - 결국 지상층을 요구하여 노조원이 참여하였으나 비노조원 대비 생산성 저하로 손실 크게 증가
- 45일간 하루 세 번씩 현장을 점검한다는 이유로 업무방해

  ※ 총 피해금액 약 80억원, 골조공사 지연으로 전 업종 약 2개월 공사 지연

건설노조 불법행위 관련 주요 언론보도

건설노조 불법행위 관련 주요 언론보도

연합뉴스('23. 3. 9)

- 조폭에 가짜 노조까지…석달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29명 구속
  - 경찰, 특별단속 중간 성과 발표…2863명 적발·102명 송치
  - 적발 사례 75%는 금품 갈취…공사 방해·채용 강요도

건설현장 불법행위는 '천태만상'

특히 조직 폭력배가 개입해 금품을 갈취하거나 노조를 빙자한 이익단체가 업무방해를 한 사례

ㅇㅇ 지역 한 폭력조직원은 지역 건설노조 법률국장으로 활동하면서 노조 전임비 1천1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구속 송치

ㅁㅁ 지역 폭력조직원 2명도 허위로 노조를 설립한 뒤 건설현장에서 집회를 개최하거나 외국인 불법고용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월례비 명목으로 8천 100만원을 갈취했다가 적발돼 구속

건설노조 불법행위 관련 주요 언론보도

조선일보(’23. 4.20)

- **건설현장에 출근한 척… 11개월간 일당 챙긴 ○○당 대표**

- A노총 건설노조에 들어가
- 현장 팀장으로 이름만 올린 후
- 외국 가고 시위해도 돈 받아가

최근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원내에 진입한 ○○당의 공동대표 ㅁㅁㅁ(여·53)씨는 지난 11개월간 수도권 한 아파트 공사장에 ‘현장 팀장’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노임 3700여 만원을 받아

A노총 건설노조 소속인 장 대표는, 해당 기간에 **집회·시위에 나가거나 외국에 있었던 시기에도 마치 현장에 출근해 일을 한 것처럼 처리해 건설사에서 일당을 타 감.** ㅁ 대표 외에도 내란 선동으로 강제 해산된 △△△ 출신 인사들이 A노총 건설노조를 통해 대거 건설 현장에 취직했는데, 상당수는 실제 일을 하지 않은 날에도 일당을 수령

건설노조 불법행위 관련 주요 언론보도

매일경제(’21.10. 5)

- **아들 계좌로 월 3억 조합비 챙긴 얌체 위원장…조합원들 사기 고발**

- 노조 이름과 비슷한 단체 설립
- 20대 아들 내세워 月 3억 챙겨
- 조합원들, 사기혐의 경찰 고발

노동자들이 매달 납부하는 억대의 노동조합비를 자신의 아들이 대표자인 임의단체 계좌로 받아온 ○○노동조합총연맹(○○노총) 산하 노동조합 위원장이 피소. ○○노총에서 회계감사 임원을 맡고 있는 그는 **노조 내부 규정을 내세우며 조합원들의 회계자료 공개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5일 경찰과 노동계에 따르면 ○○노총 산하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산노조)' 조합원 15명은 위원장 A씨와 사무처장 B씨 등을 지난달 서울경찰청에 사기·횡령 등으로 고소

건설노조 불법행위 관련 주요 언론보도

문화일보(’23. 3.10)

- **노조비 16억 빼돌려 집 사고 골프치고… ○○노총 산하 노조위원장 송치**

- 위원장 친형·경리직원도 송치…매수한 주택 노조원에 임대해 월세 챙기기도

서울 광진경찰서는 거액의 노조비를 착복해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업무상 횡령 등)로 ○○노총 산하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 위원장 이모(51)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힘. 노조 감사를 지낸 이 씨의 친형과 경리 직원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김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3년간 **개인 계좌로 노조비를 입금하거나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노조비 약 16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횡령한 노조비로 부동산을 사들이거나 골프를 치고 고급 식당을 가는 데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매수한 주택을 노조원에게 임차해주고 월세를 챙기기도 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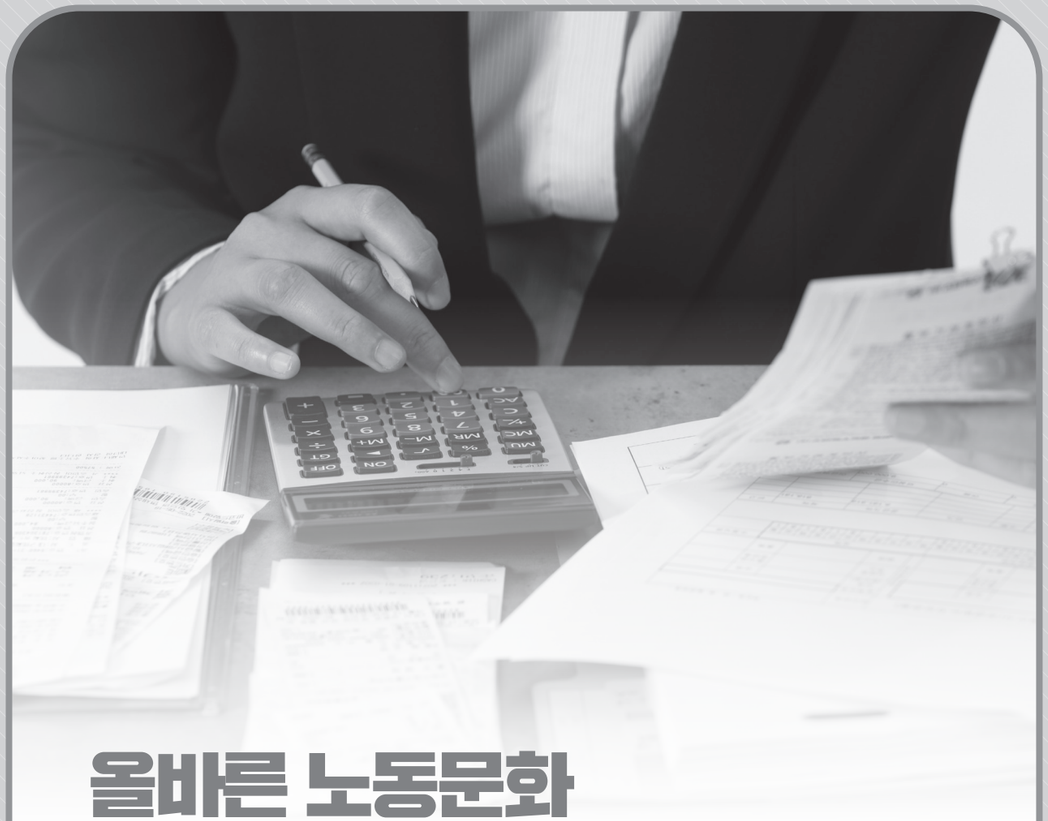

올바른 노동문화 정착을 위한 대토론회

건강한 노조를 위한 첫걸음은 회계투명성

발제

건설노조 불법행위 대응과 회계투명성 강화 필요성

박광배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건설노조 불법행위 대응과 회계투명성 강화 필요성

2023. 6. 8(목)

박 광 배(대한건설정책연구원)

RICON 대한건설정책연구원

- 차 례 -

I. 서 론

II. 건설노조 불법행위 유형 및 대응의 어려움

III. 건설노조 불법행위 제재 법·제도 정비 필요성

IV. 건설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필요성

RICON 대한건설정책연구원

I-1. 논의 배경: 노동개혁 추진과 성과

■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는 노동개혁

- 노동의존도 높고, 건설노조 불법·부당행위 급증한 건설업은 직접적 영향, 기대감 상승

■ 2023년 개혁 추진 원년, 가장 중요한 개혁은 노동개혁(2023년 업무보고)

■ 노동개혁 필요성에 대한 문제의식: 법 경시 풍조, 불합리한 노사관행, 경직적인 노동규범 등

- 노사법치주의 확립: 근로손실일수 역대 최저, 채용절차법 준수율 2배 이상 개선 등 성과
- 불합리한 노사관행 교정: 고용세습 단체협약 대폭 개선

<그림 1> 근로손실일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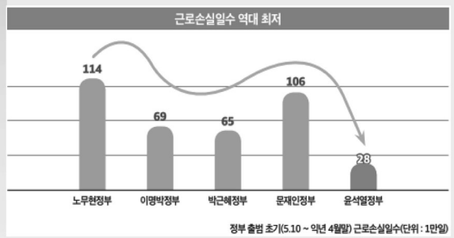

<그림 2> 채용절차법 준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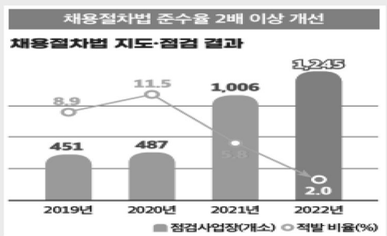

자료: 대한민국정부, 국정과제 30대 핵심 성과

자료: 대한민국정부, 국정과제 30대 핵심 성과

I-2. 논의 배경: 노조 회계 공개, 투명성 강화

■ 윤석열 정부 1년 평가(B학점), 가장 잘 한 정책 "강성 노조에 대한 원칙적 대응" 응답비중 81%

- 화물연대 파업 엄단, 고용세습 근절,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등을 CEO들은 높게 평가

■ 노동개혁 실행방안으로서 노조 회계 공개 및 투명성

- 건설노조 불법·부당행위, 불투명한 금전과 직접적 연관
- 건설노조 회계 공개 법적 근거와 투명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필요

<그림 3> 매일경제 기업 CEO 대상 설문조사(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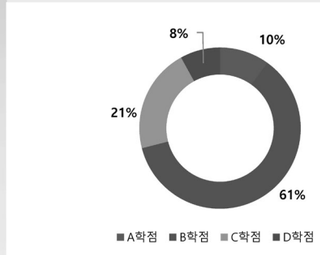

<그림 4> 노조 회계 투명성 기반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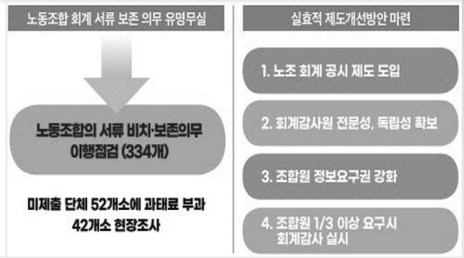

자료: 매일경제, 2023. 5. 3

자료: 대한민국정부, 국정과제 30대 핵심 성과

I-3. 논의 배경: 건설노조 불법·부당행위 제재 필요

■ 공정채용법, 채용과정에서 고용주의 공정성 개선에 초점

- 공정채용법 마련 중, 설문조사 결과 "부정한 채용 금지" 응답 비중 21.7% 등 고용주 규제

■ 건설현장의 채용강요 행위 등은 노조에 의한 불법, 부당행위로 현행 채용절차법, 검토 중인 공정채용법을 통해서도 실효적인 제재 어려울 수 있음

- 공정채용법 등에 제재 및 교정의 실효성 제고와 함께 실질적인 제재수단으로 회계 공개 필요

<그림 5> 공정채용법에 담기길 바라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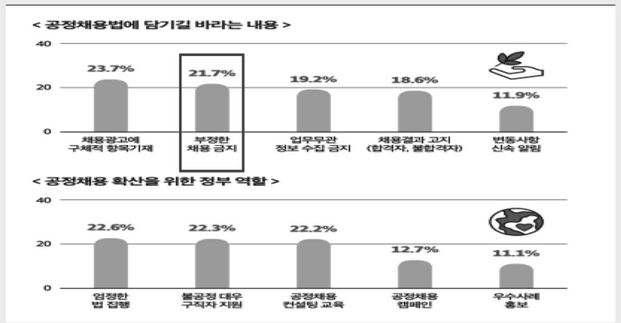

자료: 대한민국정부, 국정과제 30대 핵심 성과

I-4. 논의 배경: 건설현장 정상화 실효적 수단 필요

■ 시공과정은 다수의 하도급자에 의한 순차적인 생산활동, 이 과정은 하도급으로 진행

- 건축공사 공정순서: 토목공사→골조공사(전기, 설비 관련 시공)→습식공사→ 건식공사(마감공사)→조경공사

■ 건설기계 공급자의 독점적 지위 보유, 임차자는 협상력 열위 상태

- 운송거부, 불법부당한 월례비 요구, 일방적 단가인상 통보 등

■ 건설현장 정상화 위해 건설노조 불법·부당행위 엄정 대처, 회계 공개로 실효적 제재 필요

<그림 6> 하도급 생산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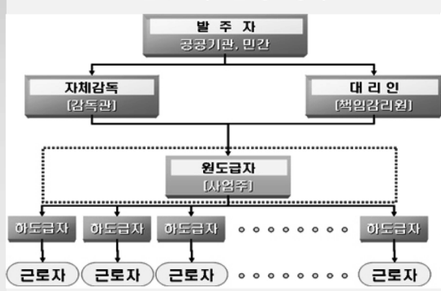

<표 1> 종합공사 원가 구성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재 료 비	24.85	25.10	26.02	27.21	26.34	24.90	22.95	24.27	24.23	23.40
노 무 비	5.70	5.93	6.27	5.76	6.01	6.17	7.54	5.71	7.23	8.19
외 주 비	**56.12**	**53.93**	**53.83**	**53.66**	**54.80**	**56.79**	**57.43**	**58.44**	**57.43**	**56.80**
현장경비	13.32	15.05	13.88	13.36	12.84	12.15	12.09	11.59	11.12	11.61
(기계경비)	(2.14)	(2.05)	(2.25)	(2.27)	(2.20)	(2.02)	(2.61)	(1.83)	(2.24)	(2.33)
공사원가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자료: 대한건설협회, 2021년 기준 완성공사 원가통계

I-5. 논의 배경: 건설현장 정상화 위한 법·제도 정비

■ 건설노조 불법행위 단속
- 중앙일보(2023.03.10), 경찰은 3개월 특별단속 통해 채용강요, 장비사용 강요, 금품 갈취, 업무방해, 불법 시위 등 581건 2,863명 단속, 102명 검찰 송치, 29명 구속
  • 2016년 특별단속 대비 단속 17배, 구속 14배 증가

■ 최근 일관된 불법행위 대응으로 건설노조 투쟁 동력 약화
- 노동계 관계자(대한경제, 2023. 5.18), 일자리 문제로 어쩔 수 없이 노조 집회 참여 많았으나 최근 집회 참석 이유 없고, 현장에서 노조원 밀어 넣기도 안 통해

■ 건설현장 인터뷰 결과, 월례비와 건설노조 금품요구 및 채용강요 급감
- 안산 현장(A업체): 국토부 가이드라인, 현장에 공문 부착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조심하는 분위기 역력, 월례비 요구 없고 준법투쟁 내세우며 운행 지연도 없음
- 대구 현장(B업체): 공정율 10% 미만, 건설노조의 채용강요와 타워크레인 문제 없으나, 공사 진행 초기단계여서 두고 봐야 한다는 의견
- 수도권 현장(C업체): 월례비와 건설노조 불법·부당행위 감소, 이런 상황 지속 필요

■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돼 있음
- 건설산업기본법: 채용강요, 금품요구, 장비사용 강요 등의 금지 규정
- 건설기계관리법: 정당한 이유 없는 운송 거부 시 사업자등록 취소 등 규정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불법행위 실효성 제고

■ 건설현장 정상화가 진행중인 현재의 상황 지속 위해서는 법·제도 정비 필요

II-1. 건설노조 불법행위 유형

■ 전문건설협회 실태조사 결과(2021.11~2022.04)
- 3차례 실태조사 결과, 채용 강요 행위가 가장 많았음

■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청 특별조사 결과
- 금품요구 및 갈취의 비중이 75.2%로 압도적으로 높음
- 구속 기준: 노조 전임비, 발전기금, 월례비 명목의 금품갈취 72.4%

<그림 7> 전문건설협회 실태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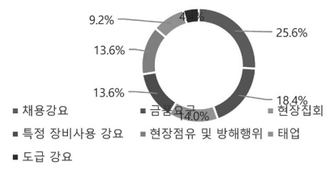

자료: 대한전문건설협회 실태조사 결과 활용 작성

<그림 8> 경찰청 특별단속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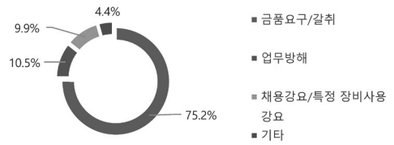

자료: 뉴데일리, 2023. 1. 20

<표 2> 경찰청 불법행위 구속 현황

서울 중부	22. 12. 14.	서울 일대 11개 건설사를 상대로 自노조원 채용 협박 및 전임비 등 명목 2억 4백만원 갈취한 군소 노조위원장 등 2명 구속
충북 충주	22. 12. 15.	충주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같은 노조 화물기사를 차에 태우고 칼을 들이밀며 '작업 중단하라' 감금 · 협박한 韓 노조원 1명 구속
울산 남부	23. 1. 9.	울산 아파트 건설현장에 채용 강요 및 근로자를 10일간 철수시켜 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民노 조직부장 1명 구속
세종 남부	23. 1. 10.	'환경단체' 명목의 살수차 조합을 설립 후, 건설사들을 상대로 살수차 사용을 강요, 사용료 4억여원 갈취한 조합장 등 2명 구속
강원 강릉	23. 1. 13.	강릉 일대 8개 건설현장에서 채용 강요 및 6,326만원 갈취한 혐의로 1명 구속

자료: 뉴데일리, 2023. 1. 20

II-1. 건설노조 불법행위 유형

■ 국토부, 2022.12.30~2023.01.13, 12개 유관기관 통해 실태조사(1,494개 현장 2,070건 불법행위)
- 권역별: 수도권(45.6%, 681건), 부산·울산·경남권(34.9%), 대구·경북권(8.4%), 광주·전라권(5.3%)
- 유형별: 타워크레인 월례비(58.7%, 1,215건), 전임비 등 강요행위(27.4%)
- 공사지연: 1,494개 현장 중 329개 현장, 22.0% 비중
- 피해액 제출 업체: 118개 업체의 3년 간 피해액 규모 1,686억원

■ 건설노조 보복 두려워 건설업체는 경찰 신고조차 포기
- 경찰과 관할 지자체 등에 신고해도 아무런 변화도 없었던 경험, 포기→인식 개선될 수 있는 조치 필요

<그림 9> 권역별 건설노조 불법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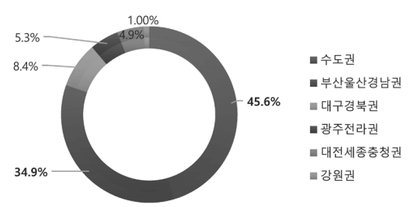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3. 1. 19 활용하여 작성

<그림 10> 유형별 건설노조 불법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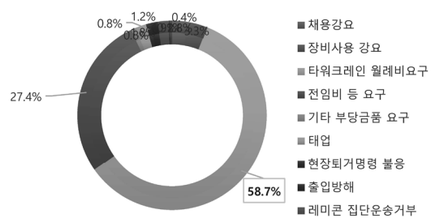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3. 1. 19 활용하여 작성

II-2. 건설노조 불법행위 사례

■ A건설(철콘업체, 양주 현장)
- 수 개의 군소 노조가 현장에 찾아와 공사방해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월 6공수(6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전기금 명목으로 요구
  • 해당 업체는 2~3개만 왔으면 좋겠다는 하소연, 일급 25만원 기준으로 월 150만원
- 지하주차장, 노조팀 25~30명, 이들 중 4~5명은 노조활동만 함
- 노조의 요구 거부 시: 고소, 고발 남발해 지자체와 관할 노동청에 현장 방문 및 단속
- 현장에 출근하는 근로자 신분증 검사(불법 외국인 색출 명목)

■ B건설(철콘업체, 대구)
- 노조에서 해당 현장에 채용될 작업팀 통보
- 레미콘노조와 연계, 현장에서 노조 요구 수용하지 않으면 레미콘 운송 거부
- 레미콘, 펌프카 등의 노조와 건설노조가 연대하여 불법행위 자행

II-2. 건설노조 불법행위 사례

■ C건설(철콘업체, 군포 소재)

- 현장 개설 이전 집회 신고, 현장 개설 후 노조와 면담(노조가 팀 정해서 통보 후 채용요구, 채용 거부하면 집회 지속하며 확성기 소음 발생 후 관할 지자체에 민원 신고
  - 소음 발생의 당사자인 노조에서 민원을 제기, 드론으로 현장 촬영
- 레미콘차량 진입 방해
- 다른 노종원이 현장에서 퇴출될 때까지 태업, 집회, 차량으로 출입구 막는 등의 공사방해
- 해당 하도급업체가 노조에 강경 대응 시 전국의 다른 현장에서도 차량 동원 집회
- 변호사 또는 노무사 등의 전문가 활용: 조언을 바탕으로 불법의 경계
- 노조전임비: 노조 당 6공수, 월 150~170만원, 해당 업체는 8개 노조에 지급
- 민간고용서비스기관(용역업체) 연계하여 근로자 투입(노조가 확보한 일자리에 민간고용서비스업체 구직자 배치)
- 원도급자 비협조: 공기지연 시 지체상금 부과, 정산 시 불이익 등

II-2. 건설노조 불법행위 사례

■ D건설(철콘업체, 울산)

- 민주노총, 철근, 형틀, 비계, 해체 등 공정별 분과위원회 운영
- 하도급 입찰 시 각 분과위원장이 하도급 견적금액에도 개입 및 영향력 행사
  - 울산 소재 하도급업체의 견적금액이 외지 업체의 금액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고, 하도급공사 수주 어려움
- 발전기금 요구: 채용 목적 아닌 현장에서의 집회 안 하는 조건으로 요구, 현장당 500~1,000만원 수준
- 시청, 군청에 반복적 민원제기로 민원 접수 담당자는 민원해결 독촉

■ E건설(철콘업체, 부산)

- 타워크레인 월례비 700~1,000만원 요구
- 특정 노조 채용 시 다른 노조의 공사방해 행위
- 펌프카, 지게차, 레미콘 사용 시에도 노조가 간섭, 영향력 행사
- 건설경기 하강에 따라 현장 감소 예상하고 더욱 강경하게 불법행위 자행

II-2. 건설노조 불법행위 사례

■ F건설(철콘업체, 경남)

- 단협비: 23.5만원 X 6만원
- 발전기금: 월 20만원
- 노조 행사 및 노조원 경조사비 부담 요구
- 현장 채용 안 된 노조: 노조관계자 주민증 주고 출역근로자로 등재 요구, 노임명목 금액 요구

■ 2017년 이후 노조 영향력 확대: 2016년 11만 2,500명의 조합원→2020년 24만 9,500명, 2022년 28만 6,515명으로 증가

- 아파트현장 증가, 근로자 부족과 불법 외국인근로자 등에 따라 노조원 증가

자료: 중앙일보, 2023. 2. 21

자료: 중앙일보, 2023. 2. 21

II-3. 불법행위 대응의 어려움

■ 민간 건축공사 위주 계약액과 기성액 증가추세

- 건설근로자 수급불균형 심화, 노동 공급자의 협상력 강화

■ 건설기계 활용도 높은 토목공종 계약액과 기성액 정체, 건설기계 수요 감소

- 건설기계의 수요 감소는 가격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노조의 압력 강화로 현실화

<그림 11> 건설공사 공종별 계약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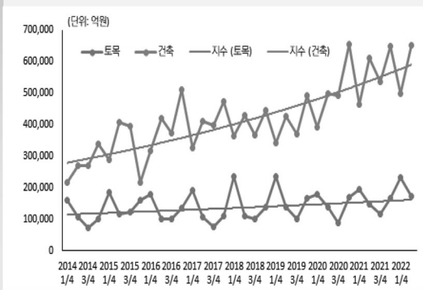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kosis) 자료 활용하여 작성

<그림 12> 건설공사 공종별 기성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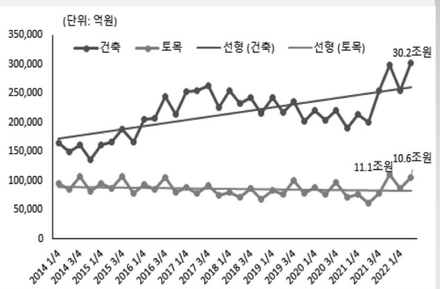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kosis) 자료 활용하여 작성

II-3. 불법행위 대응의 어려움

■ 분기별 취업자수 변화 반복되지만, 추세적으로 증가추세 유지
- 그러나 건설근로자는 입직 기피(3D), 기존 근로자의 고령화 및 이탈 확대
- 현장에서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건설근로자 확보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음(<표 2> 참조)

■ 건설업체의 공기 준수의무에 대한 압박감 악용
- 공사방해 및 공사중단은 건설업체 압박 수단, 특히 주거용 공동주택은 입주일 지정으로 공사중단이나 공기지연에 보다 민감→공사방해 행위에 대항 수단 부재(원도급자의 압력 포함)

<그림 13> 분기별 건설업 취업자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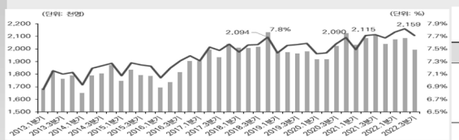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kosis) 자료 활용하여 작성

<그림 14> 건설업 고령화지수 및 고령화 추이

자료: 박세정 외, 임금근로자의 고령화와 산업별 노동시장 변화, 한국고용정보원

<표 3> 철콘 실제임금 시중노임단가 차이

<표 12> 최근 철근콘크리트 공종 건설근로자(기능인력) 실제 임금 지급 현황 및 시중노임단가와의 차이 분석 결과-(계속)

(단위 : 원/일인, %)

구 분			2021년 상반기	2021년 하반기	2022년 상반기	2022년 하반기
형틀목공	현장 지급 내역	최저	230,000	210,000	220,000	220,000
		평균(A)	238,000	233,000	245,143	281,175
		최고	250,000	250,000	276,000	300,000
	시중노임단가(B)		226,280	230,766	242,138	246,376
	A-B (B대비 비율)		11,720 (5.2%)	2,234 (1.0%)	3,005 (1.2%)	34,799 (14.1%)
철근공	현장 지급 내역	최저	230,000	230,000	210,000	240,000
		평균(A)	240,000	231,818	229,500	242,500
		최고	250,000	250,000	260,000	300,000
	시중노임단가(B)		228,896	229,629	236,805	240,080
	A-B (B대비 비율)		11,104 (4.9%)	2,189 (1.0%)	-7,305 (△3.1%)	2,420 (1.0%)
콘크리트공	현장 지급 내역	최저	-	220,000	220,000	230,000
		평균(A)	-	230,000	226,000	236,316
		최고	-	250,000	250,000	250,000
	시중노임단가(B)		215,145	220,755	227,269	235,988
	A-B (B대비 비율)		-	9,245 (4.2%)	△1,269 (△0.6%)	328 0.1%
비계공	현장 지급 내역	최저	-	250,000	270,000	270,000
		평균(A)	-	250,000	270,000	270,000
		최고	-	250,000	270,000	270,000
	시중노임단가(B)		247,977	254,117	262,297	269,039
	A-B (B대비 비율)		-	△4,117 (△1.6%)	7,703 (2.9%)	961 (0.4%)

자료 :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시중노임단가) 각 반기 및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발주 시험OO OOOOO 건립공사의 영등포구 발주 OOOO시설 건립공사 노무비청구서 각 월 참조.

자료: 전영준(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발간 자료

II-3. 불법행위 대응의 어려움

■ 토공과 골조공정은 현장에서의 시공과정에서 초기단계 공정
- 골조공정은 공사의 초기부터 중기까지 지속, 노조 조합원 대부분은 골조공정 직종으로 구성
- 이런 상황 때문에 골조공정에 건설노조 불법행위 집중돼 있음

■ 토공사와 골조공사에서 공기가 지연되면 마무리공정 등 후속공정은 돌관작업 등 무리한 공사
- 도급계약 미이행 시 지체상금 부담, 입주예정자 혼란

<표 5> 민간건설사의 공기산정 기준(예시)

구분			공기(개월)
지하	가설		1.00
	흙막이		0.50
	토공		**2.96**
	지정		1.00
	기초		0.40
	PIT		0.30
	주차장 구체		2.00
지상	**골조**		**7.37**
	마감		**6.70**
	BS		2.30
추가	급지	1급지	4.88
	층 변화층	없음	0.00
	TP(지하)	미적용	0.00
	필로티/테라스하우스	없음	0.00
	복층(펜트하우스)	미적용	0.00
	기타 직접입력(지상부 사유)		
	기타 직접입력(지하부 사유)		
계			29.41

자료: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건설공사 적정공기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안전보건공단

<그림 15>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 직종(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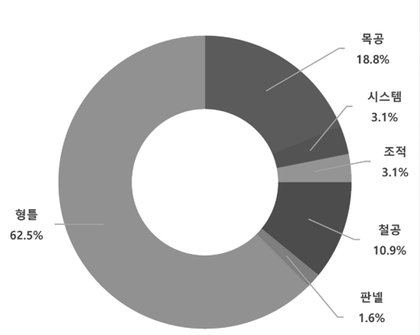

자료: 건설근로자공제회, 직종별 표준근로계약서 도입·활용, 대한건설정책연구원

II-3. 불법행위 대응의 어려움

■ 공정 진행순서상 초기단계 공정의 지연은 해당 현장의 공기 전반에 부정적 영향
- 토공: 건설기계 의존, 조종사 등의 불법부당행위, 노조 소속 기계 강용 등으로 지반조성 및 축조 등의 공정 지연은 후속공정에 영향
- 철콘: 노무중심 공정, 해당 현장에서 가장 긴 공사기간, 노동 공급 부족에 의한 공정 지연

■ 원도급자의 암묵적 압력
- 공사 전반과 현장 운영·관리자로서 강한 원도급자의 암묵적 압력과 노조 대응과정에서의 비협조(원도급자 책임 강화)

<표 4> 하도급 공종별(업종별) 직접공사비 구성 비목의 비중(2019년 기준)

업종	공사원가 합계	재료비	노무비	외주비	현장경비	기계경비
강구조물	100.00	68.04	12.08	9.84	10.04	3.39
금속창호온실	100.00	63.08	24.89	2.44	9.59	1.46
도장	100.00	44.12	**45.81**	0.38	9.68	0.44
보링그라우팅	100.00	23.09	24.97	11.35	40.58	**19.12**
비계구조물	100.00	29.08	17.15	20.46	33.31	**21.67**
상하수도설비	100.00	28.08	39.77	2.91	29.23	12.57
수중	100.00	17.74	31.47	0.00	50.79	**20.51**
습식방수	100.00	23.53	**56.71**	0.07	19.69	0.88
실내건축	100.00	56.29	32.75	1.28	10.67	0.56
조경시설물	100.00	52.01	32.75	1.28	10.67	0.56
조경식재	100.00	50.53	20.82	0.19	28.46	8.03
지붕판금건조	100.00	65.29	24.44	1.24	9.03	2.81
철근콘크리트	100.00	22.60	**51.14**	1.94	24.31	6.40
토공	100.00	22.17	23.75	6.00	48.07	**32.05**
포장	100.00	53.47	24.59	2.50	19.43	6.77

자료: 홍성호 외, 전문건설업 원가분석, 대한건설정책연구원

II-4. 불법행위에 대한 전문건설업체 대응 실태

■ 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공동(2021.11) 1차 실태조사 결과
- 권역별로는 수도권 집중, 광주·전라권 순으로 많음
- 공정별로는 철콘공정이 대부분, 유형은 업무방해, 채용강요 등의 순
- 전문건설업체 대응은 대부분 불법요구 수용(76.3%), 1개 현장에서 여러 유형 불법행위, 다양한 규모의 공사에서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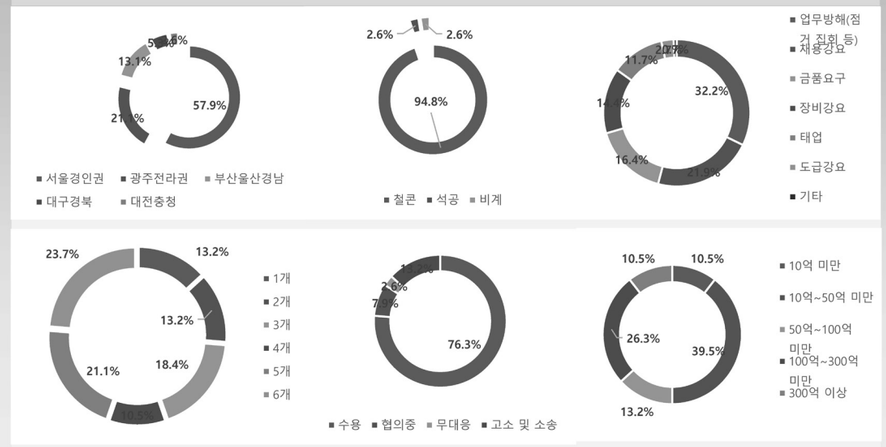

자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공동 수행한 실태조사 결과 바탕으로 작성

III-1. 법·제도 정비 필요성

■ 대한경제 (2020.02.25), "양대 노총 모두 고용으로 휴전"

- 금광동 현장,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조합원 채용 비율에 잠정 동의로 현장 운영 재개
- 한국노총 관계자, "만족할 만한 성과 아니지만, 대치 장기화는 입주민 피해 우려"(민노 6, 한노 4)
  - 금광동 현장 철근콘크리트공사 3개 업체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 모두 채용하기로 결정
- 갈등과 충돌 재연의 소지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현장 재개
  - 2019년 1월 29일부터 공사중단, 지역민과 입주예정자 불만 확산, 양대 노총은 추후 논의 지속 합의
  - 한국노총, 절반씩 고용 주장
  - 민주노총, 조합원 숫자 고려 시 수용 불가
- 민주노총 관계자, "휴전 상황이라고 보면 된다 "
- 전문건설업계는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업체의 채용 권한이 건설노조로 넘어간 현실이 재현됐다는 인식
  - 전문건설업계 관계자, "채용은 전문건설사가 하지만 채용 권한은 없는 상황"
  - 전문건설사, "근로자를 직접 고르지 못하고 노조가 정해주는 대로 채용할 수 밖에 없다"

III-1. 법·제도 정비 필요성

■ 대한경제(2020.10.12), "일자리 좀먹는 노사·노노 갈등" 보도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채용'문제로 대립, 2020년 1월 성남 금광동 현장 운영 중단
  - 성남시 내 건설현장 대부분 민주노총 독식, 이에 한국노총 조합원 채용 요구하며 건설사 압박
  - 한 달 넘게 이어진 일자리 다툼으로 시공사는 공정 중단
- 건설현장 집회·시위(경찰청과 국토교통부 자료 인용 보도): 2016년 217건, 2017년 310건, 2018년 643건, 2019년 1,046건, 2020년 7월까지 1,121건
- 노조 간 갈등 심화 원인으로 "노조의 힘에 의해 일자리 결정되기 때문"으로 분석
- 건설업계 피해 뿐만 아니라 제3의 건설노조 출현
- 특정 노조가 일자리 장악, 다른 군소 노조 등이 건설사 압박(전임비, 발전기금, 각종 고발 등)
- 2019년 '건설산업 노사정 갈등해소 센터' 개소, 2020년 9월까지 1건의 신고도 접수되지 않음

III-2. 채용절차법 및 근로기준법 개정(안)

■ 근로기준법에 취업기회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의 근거 규정 신설

- 이를 위해 채용절차법에 근거규정 마련 필요
- 건설노조가 채용강요 행위로 한정된 건설현장 일자리 독차지는 노조원 아닌 근로자의 권리 침해
- 건설노조 채용강요 행위, 노조원 아닌 근로자의 일자리 침해, 근로기회에 악영향 제재 필요

<표 6> 채용절차법 제1조 및 제4조의2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채용과정을 통해 구인자가 구직자를 채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구직자와 구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생략) 2. (생략) [본조신설 2019. 4. 16.] **3. <신설>**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생략) 2. (생략) **3. 단체 등을 동원하여 채용과 관련하여 구안자에게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표 7> 근로기준법 제15조의2 신설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관련 법령을 위반한 근로계약) <신설)	**제15조의2(관련 법령을 위반한 근로계약) 채용절차법 제4조의2 제3호를 위반한 근로계약은 무효로 한다.**

III-3. 노동조합법 제81조 및 제90조 개정(안)

■ 노동조합법에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규정 신설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구분
- 건설노조 채용강요 행위 등을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제재 근거 필요

<표 8> 노동조합법 제81조 및 제90조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81조(부당노동행위)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 5. (생 략) ② (생 략) **③ <신 설>**	제81조(부당노동행위)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특정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강요하거나 가입된 노동조합의 탈퇴를 강요하는 행위** **2. 해당 노동조합에 소속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적 조치나 지위를 약화시키는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3. 근로자의 채용과 관련하여 불공정한 합의, 협약 등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4. 소속 조합원 채용강요 또는 장비사용 강요와 이와 관련한 금품요구, 사업장 점거, 협박, 폭행, 공갈, 태업 등으로 사용자의 조업을 방해하는 행위**
제90조(벌칙)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0조(벌칙) ---------- **제81조제1항및제3항**---------. **다만,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하여 노동관계 당사자 어느 일방의 강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II-4.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개정(안)

■ 건설노조의 노조원 조종사 채용강요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 마련 필요

■ 타워크레인 임대차계약은 외형상 대등한 입장으로 인식

- 그러나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건설노조원 비중이 약 94%로 파악되고 있고, 이들 노조의 채용강요 행위에 대해서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의 대항수단이 없음

<표 9>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0. 현행 유지 **11. <신설>** 12.~20. 현행 11호를 12호로 규정하고 현행 각 호를 순차적으로 20호로 적용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11. 제22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u>** 12.~20. 현행 11호부터 19호 현행 유지하고 11호를 12호로 규정하고 현행 각 호를 순차적으로 20호로 적용

III-5. 집시법 제8조 개정(안)

■ 건설사 압력 및 불법행위 수단으로 이용되는 집회 선별 허용 필요

-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 표현의 자유에 필수적인 권리지만 한계 필요
- 무제한의 권리라고 할 수 없고, 보장의 범위는 타인의 정당한 권리 침해하지 않는 범위
- 현장 개설 이전부터 이루어지고 시공 중에도 지속되는 집회는 건설업체의 정당한 권리 침해해 사업주의 고유한 권리 침해 우려, 이 경우 제한 필요

<표 1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①~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1~3. (생략)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 **4. <신설>**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①~④ (생략) ④ 1.~3. (현행 유지) **<u>4.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u>**

IV-1.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기반 구축 동향

■ 국고를 지원받는 단체는 당연히 회계 관련법령 규정 준수가 의무

■ 노동개혁 출발점(대통령, 2023.02.17),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로 인식

■ 정부, 노조의 회계 투명성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인식

- 회계장부 비치·보존 결과 제출하지 않는 노조 무관용, 엄정 대응
- 회계 관련법령 미준수 노동단체는 지원사업 배제
- 노조 회계공시시스템 구축, 가이드라인 마련 등 회계 투명성 제고 위한 법·제도 개편

■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기반 구축 방향

- 노조 회계 공시 활성화
  - 2023년 3분기 회계공시시스템 구축(예정)
  - 회계공시 이행 노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보조금 지원 시 우대)
  - 조합원 요구 시, 횡령·배임 등으로 조합원 권익 침해 시는 공시 의무화
- 회계감사원 전문성·독립성 확보
  - 회계감사원 자격 공인회계사 등 자격 요건 노동조합법 규정, 조합원이 직접 선출 등
- 조합원 정보요구권 강화
  - 조합원 열람권만 규정, 제재규정 미비→열람권 명문화, 제재규정 마련, 회계 관련 서류 보존기간 5년으로 확대(현행 3년)
- 회계감사 실시 사유 확대

IV-2. 주요국 노조 재정 투명성

■ 미국, 영국: 노조는 행정청에 노조 감사보고서 제출, 조합원의 접근권한 규정 마련

■ 영국, 일본: 노조의 회계감사원은 이해관계자가 아니며, 전문자격 보유한 자로 한정해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 노력

■ 독일, 프랑스: 재정 정보 상시 공시, 포괄적인 업무에 대한 감사 통해 노조의 재정 투명성 제고 유도

※ 주요국 사례는 전경련, Global Insight, Vol.101(2023. 3. 30)에서 인용

<그림 16> 주요 선진국 노조 재정회계 운영 비교

		영국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재정운영	규율방법	법령 (LMRDA)	법령 (TULRCA)	법령 (노동조합법)	자치규약	자치규약
	행정관청 보고여부	O (노동부장관)	O (인증권)	-	-	-
	공개범위	회계, 포괄적 업무	회계 *감사증명 必	회계 *감사증명 必	회계, 포괄적업무	회계
회계감사	독립성	-	O	O	O	O
	전문성	-	O	O	△ *직업관련성	△ *직업관련성
조합원 접근	규정	O	O	-	△ *요구시	△ *요구시
	보존기간	5년	6년	-	5년	-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Global Insight

<표 11> 주요 선진국 노조 회계 관련 규율

구분	규율방식	특징
미국	법령을 통한 규제	- 노조 재산 운영 및 간부의 재산 보고 책임 중시
영국		- 회계 감사 시스템 중시 - 재정정보 관련 내용 제출 및 설명 의무, 조합원의 조합회계 정보 접근권, 회계감사 등 규정 존재
프랑스	엄격한 노조 규약을 통한 노조 자치 형태	- 노동조합 재정의 관리 감독에 관한 법적 규율은 존재하지 않지만 노조규약에 정기적 재정보고, 회계 감사위원회 구성 등 노동조합의 규약과 조직 내의 시스템을 통해 매우 엄격한 관리 형태
독일		- 노동조합의 규약을 통해 노동조합의 회계업무 외에 노동조합에 대한 포괄적인 감사업무 규정
일본	영미 국과 유럽의 중간방식	- 노동조합법 회계 감사 및 노조 기금 사용과 관련한 규정 존재
한국	영미형에 가까우나 규율 내용은 주요국에 비해 적음	**- 노동조합에 대한 회계 기준 및 공개기준, 회계감사의 자격과 선출, 감사위원회 구성, 감사결과보고서 등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음**

자료: 이상희,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IV-3. 건설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필요성

■ 노조의 신뢰도 개선 필요

- 2021년 한국행정연구원 조사 결과, 노조의 신뢰도는 47.8%로 미흡, 시민단체 대비 5.6%p 낮음

■ 불투명한 회계 운영에 따른 배임과 횡령 사건 발생 예방

- 2022년 6월,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위원장 횡령 혐의 구속
- 2023년 3월, 한국노총 산하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 위원장 노조비 횡령 혐의 송치

■ 건설현장에서 건설노조의 금품 강요 유형인 전임비, 발전기금, 단협비 등의 처리에 대해 확인 안 됨

<그림 17> 기관 신뢰도(2021년, 한국행정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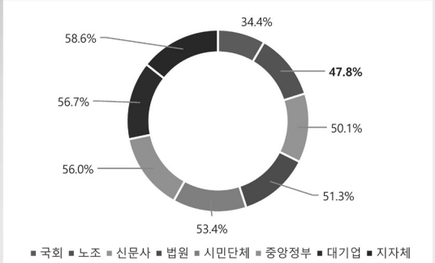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자료 활용하여 작성

<그림 18> 공사현장 피해액 보도자료(중앙일보)

유형	주요사항
기간	금액(원)
노조원 과투입	노노 갈등, 채용 강요로 인한 인원 과투입
2021년 6월~2022년 7월	약 53억
무노동 임금	노동 미제공한 팀장 등에 임금 지급
2021년 6월~2022년 7월	약 6억5000만
노조 전임비	여러 노조에 불법 노조전임비 강제 지급
2021년 6월~2022년 11월	약 8000만
주휴수당	노조 자체 근로계약서 등 통한 기본 수당 외 추가 지급
2021년 10월~2022년 7월	약 6억8000만
현장 쟁의활동	쟁의활동으로 인한 손실
2021년 9월~2021년 11월	약 3억1000만
불법 파업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레미콘 타설 중지로 공사지연
2022년 6월, 11월	약 2억

자료: 중앙일보, 2023. 2. 21

IV-4. 외국의 노조 회계 관련 규율

■ 미국: 노사정보보고 및 공개법(거대 노조 활동 확대와 부작용 발생 계기로 법 제정)

- 조합비, 노조 내부 징계 등 조합원의 권리 보장과 노조 운영 관련한 조합민주주의 및 재정 투명성 확보 위해 노조 임원에게 일정한 책임 부과
- 노조 일반에 관한 회계감사, 노동부장관에게 보다 상세한 회계내용 보고를 위한 연차회계보고서 보고 의무 부과
  - 연차회계보고서는 자산과 부채, 수령금과 그 출처, 총액 1만불 이상 수령한 조합임원과 노조 피용자에 지급된 임금 및 기타 지불액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영국: 1980년대 노조의 영향력 증대, 적극적인 정보접근과 회계관련 조사 가능하게 개편

- 노조는 노조 명부 관리하는 인증관에게 연차보고서 제출 의무 있음
  - 연차보고서는 노조의 대차대조표와 수익계정, 현금흐름표, 감사보고, 노조간부에게 지급된 급여와 이익의 새부내역 포함돼야 함
- 노조의 회계관련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회계정보 공개하여 연차보고서 관련 조합회계에 대한 설명의무 부과

■ 일본: 노조 규모 크지 않고 민주적 운영에 관한 최소한의 규율만 규정

- 노동조합법은 노조의 회계감사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음
- 매년 1회 조합원에게 회계보고 공표, 조합원에 의해 위촉된 전문자격자인 회계감사인이 확인해주는 증명서 첨부할 수 있도록 규정
  - 직업적 자격이 있는 회계감사인은 법령에 의해 직업으로 회계감사를 할 자격이 있는 자이며, 구체적으로는 공인회계사법의 해석상 공인회계사 및 감사법인과 신탁회사 등임
- 노동조합법은 노조의 기금 사용 관련 규정도 두고 있음
  - 공제사업과 기타 복리사업 목적으로 설치한 기금을 다른 목적으로 유용하고자 할 때는 총회 의결 필수
  - 기금의 다른 목적 사업은 정치적 목적, 쟁의목적, 문화적 목적을 포함하며, 다른 노조의 파업 지원 목적도 포함됨

※ 해외사례 검토는 이상희,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한국경제연구원 참고하여 작성

IV-5. 건설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위한 법령 개편 필요

■ 현행 노동조합법 제25조 제2항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에 미흡

■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는 건전하고 자주적인 활동과 비노조원의 선택권과 단결권 보장 위한 필수요건

- 개혁과제 중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노동개혁 위해서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필요성에 공감대

■ 현행 노동조합법 규정 개정을 통해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위해 일부개정안 발의

- 재정서류 관리, 회계감사원 자격과 선출방법 및 외부감사 실시, 대기업과 공공기관 노조 회계보고 의무 등에 관한 사항 개정으로 투명성 제고 취지
- 하태경 의원안
  - 회계감사원 자격 회계법인, 감사반(제25조 제1항 개정)
  - 노조 결산결과·운영상황 공표·열람 시 대상 서류 명시(제26조)
  -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 공공기관 노조는 행정관청 보고의무, 행정관청은 위반사실 있을 경우 관련 자료 공표(제27조 제2항, 제3항 신설)
- 정우택 의원안
  - 회계감사원 자격 공인회계사(제17의2 신설)
  - 노조와 독립된 외부 감사인의 감사(제25조의2 신설), 외부 감사인은 부정행위 또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 발견 시 노조 대표자 또는 회계감사원에 통보, 노조 대표자 또는 회계감사원을 시정조칠결과 총회·대의원회 또는 외부 감사인에게 보고·제출 의무부과(제25조의3 신설)
  - 노조 결산결과·운영상황 공표·열람 시 대상 서류 명시(제26조)
  -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 공공기관 노조는 행정관청 보고의무, 행정관청은 위반사실 있을 경우 관련 자료 공표(제27조 제2항, 제3항 신설)
  - 장부 및 서류 보존기간 5년으로 연장(제14조 제2항 개정)

※ 개정안 관련 자료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참고하여 작성

IV-5. 건설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위한 법령 개편 필요

<표 12> 각 개정안별 주요 내용

구분			하태경의원안	정우택의원안
재정서류 관리			-	·재정관련 장부·서류 보존기한 연장: 현행 3년 → 5년
회계 감사	회계감사원 자격		·회계법인(「공인회계사법」) ·감사반(「외부감사법」)	·회계법인(「공인회계사법」)
	회계감사원 선출방법		·총회 의결	-
	외부 감사	자격	-	·회계법인(「공인회계사법」) ·감사반(「외부감사법」)
		선출	-	·총회 또는 대의원회 결의
		역할	-	·감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 ·노조 임원의 부정행위를 노조 대표자에게 통보[1] ·노조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회계감사원에게 통보[2]
결산결과·운영상황	공표·열람 대상 서류		·예산서 및 결산서, 총수입원장 및 총지출원장,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 수입관계장부 및 증빙서, 지출관계장부 및 증빙서, 자체회계감사 관계서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외부감사보고서
	행정관청 보고 의무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3]이 아닌 기업)	·대기업(「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4])
	위반사실 공표		·제출받은 결산결과·운영상황 중 법령 위반사실이 있을 경우 관련 자료 공표	

1)노조 대표자는 위반사실을 총회·대의원회에 보고
2)회계감사원은 해당 사실을 조사하여 노조 대표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며, 조사 및 시정조치결과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 → 노조대표자는 조사 및 시정조치결과를 총회·대의원회에 보고
3)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 등의 요건을 갖춘 기업
4)자산총액 5조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기업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활용하여 작성

END of
PRESENTATION

감사합니다

올바른 노동문화 정착을 위한 대토론회

건강한 노조를 위한 첫걸음은 회계투명성

토론1

토론문

권창준 |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건설노조 불법행위 대응과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토론문

<권창준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Ⅰ. 추진 배경

□ 그간 **우리사회**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법제도**도 **노동3권**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옴

○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노동조합**은 **사회의 중요한 축**으로서 **성장**하고, 그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도 요구**되고 있음

□ 그러나, **불투명한 회계 운영**으로 인해서 **노조의 대내적 민주성과 대외적 자주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 **일부 노조**의 **불법 행위들**로 인하여 **다른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의 **노동권 침해 발생**

○ 특히, 노동조합 채용비리, 소속 지회 탈퇴 방해, 노조 임원의 횡령 등 **불법행위**가 **계속**되면서 **노조**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고, 산업 경쟁력도 훼손**

□ **노사법치 확립 차원**에서 **사용자**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 및 집행**과 함께, **노조**의 **회계투명성 강화, 불법행위**에 대한 **규율**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입법**이 **필요**

○ 이에, 정부는 **조합원**은 물론 **잠재적 조합원인 근로자**의 **알권리 보호**를 통해 노조의 **단결권과 민주성·자주성 강화**를 위한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을 **강구**

○ **산업현장**의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노동조합**이 **행하는 노동3권 침해, 사용자**에 대한 **불법행위 등**을 **규율**하는 **방안**을 **모색**

Ⅱ. 노조 회계 투명성 제도개선 방안

❖ **노조 회계 관리**에 관한 현행법상 미비점 보완을 위해 **법 개정** 추진
- 법 개정 전까지는 **보충적으로 행정입법**(시행령)을 병행하여 **노조 회계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

1. 노동조합법 개정(4.3 법안 발의, 김형동 의원)

1 노조 회계 공시 제도 도입

○ '**노동조합**'과 지부·지회 등 '**산하조직**'은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통해 규약, 조합원수, 결산보고서 등을 "**공시할 수 있음**" (자율 공시)

○ [1]일정 규모 이상 노조 및 산하조직로서 **조합원 1/2 이상 요구** 시, [2]**횡령·배임** 등이 발생하여 **노동부장관 요구** 시 "**공시 의무**" 부여

2 회계감사원 전문성·독립성 확보

○ **회계감사원 자격**으로 **직업적 관련성 있는 자**로 하며, **일정 규모 이상** 노조는 **공인회계사** 등 자격 요구(현재 관련 규정 無)

○ 회계감사원은 **총회에서 조합원이 직접 선출, 임원직 겸임 금지**

3 조합원 정보요구권 강화

○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까지 **조합원 열람권 명문화**(현재 결산결과만 규정), 회계 관련 **서류 보존기간 확대**(3→5년)

4 회계감사 실시 사유 확대

○ **조합원 1/3 이상** 요구시 **회계감사** 실시, 전체 조합원 또는 총회 **공개**

5 제재 규정

○ [1]**공시 의무 미이행** 노조에 대한 시정명령 조치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 [2]~[4]그 외 법률상 의무 미이행 노조에 대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2. 노동조합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6월 초 입법예고)

1 회계감사원 전문성 제고

○ 회계감사원을 **재무·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하며,

- [1]**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나 [2]**조합원**(대의원) **1/3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함

2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 공표 시기·방법 구체화

○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회계사·회계법인 감사는 3개월 이내)에 게시판 공고 등 **전체 조합원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함

3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

○ '**매년 4월 30일까지**'(부득이한 경우 9월 30일) 노동부가 운영하는 **공시시스템**을 통해 **결산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

4 노조 회계 공시 및 세액공제 연계

○ **노조의 결산서류 공시와 노조회비 세액공제 적용 여부 연계**

- (적용대상) **조합원 수 1천명** 이상 노동조합에 대해 **결산서류 공시**를 요건으로 **노조회비 세액공제 적용**

- (시행시기) **'23년 결산서를 공시한 노조**의 **'24년 회비 납부분**부터 적용

Ⅲ. 노조 불법행위 금지(4.3 법안 발의, 김형동 의원 노조법 개정안)

1 폭행협박 등을 통한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 방해 행위 금지

1. 소속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채용·임금 등 차별 강요

○ **(필요성)** 조합원 채용 강요, 승진 차별 등으로 **공정질서**가 **침해**되고 **다수노조**에 의한 **소수노조**(또는 비조합원) **차별 등**이 **지속**되어 이에 대한 **금지규정 신설 필요**

○ **(기대효과)** ❶**복수노조**에 따른 **노노갈등 예방**, ❷**비조합원·소수노조 권리 보호**, ❸**사용자**에 대한 **불법·부당한 요구 방지**

2. 부당한 금품 등을 요구하며 업무제공 거부·해태

○ **(필요성) 최근 건설노조 등**에서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며 **작업을 거부** 또는 **해태**하는 **상황**이 **반복되어** 이에 대한 **규율 필요**

○ **(기대효과)** 노동조합의 **불법 행위**로부터 **사용자**의 **조업권 보호**

3. 폭행·협박 등으로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 방해 금지

○ **(필요성)** 쟁의행위 기간이 아닌 때에도 노동조합 주도로 **사용자·근로자에 대한 권리 침해 및 폭행 사건**이 **다수 발생**

○ **(기대효과)** 노동조합에 의한 **사용자·근로자 권리 침해 방지**

4. 폭행·협박 등으로 위법한 단체협약 체결 강요

○ **(필요성)** 노동조합이 **소속 조합원 또는 소속 조합원 자녀** 등을 **우선 채용 하는 위법한 단체협약 등**을 체결하여 **사회적 논란**

- **채용질서 등**을 **어지럽히는 위법한 행태**에 대한 **규제 필요**

○ **(기대효과)** 고용세습 등 **위법한 단협 요구**를 방지, **공정채용**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고용취약 계층의 **정당한 고용기회 보장**

2 노동조합이 他노조 및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 금지

1. 불이익한 처분, 폭행·협박 등을 통한 노동조합 가입·탈퇴 강요·방해

○ **(필요성)** 최근 **노동조합 가입**을 **강요**하거나, **산별노조 지부·분회**의 **정당한 의사**에 의한 **노동조합 탈퇴**를 **불이익**이나 **폭행·협박 등**으로 **방해**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규율 필요**

○ **(기대효과)** 자유로운 노동조합 **조작가입탈퇴** 등 **단결권**의 **실질적 보장**

2. 폭행·협박 등으로 他노조나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 및 업무 수행 방해

○ **(필요성) 복수노조 체제**에서 조합원 확보 경쟁, 다수노조의 소수노조 조합활동 방해 등 **노동조합**이 **他노동조합 및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사례 발생**

○ **(기대효과)** ❶다수노조의 **소수노조 활동 방해 방지,** ❷복수노조 사업장의 소모적 **노노갈등 예방**

3. 다른 노조의 요구에도 교섭대표 노조의 합리적인 이유 없는 교섭 거부

○ **(필요성)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등**을 **반영**하지 않고 **사용자**와 **교섭**을 **해태**하는 **등 소수노조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노노갈등 및 교섭 장기화** 상황 발생

○ **(기대효과) 교대노조**에 의한 **소수노조**의 **권한 침해 예방**

Ⅳ. 마무리

□ 노동개혁의 궁극적 목적은 **법치의 토대** 위에서 **노사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

○ 최근 복합적 요인으로 **노동시장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경직적인 제도**는 오히려 [1]**편법적인 노동관행**을 야기하며 [2]**어려운 근로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3]**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제약**

- 아울러, 오랜 기간 누적되어온 [4]**법과 상식을 경시하는 노동시장의 관행**은 **합리적 노사관계를 저해**하고, **반칙·특권을 통한 지대추구**로 **노동시장의 약자**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

○ **노동개혁은** [1]**노사법치로 노동시장 약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2]**약자를 두텁게 보호**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3]**환경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제도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

□ 이전에도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왔으나,

① **종합적 · 근본적 변화보다는 일부만을 수정하는 임시방편식 처방**으로 미완에 그쳤고

② 노사의 **불법·부당한 행위를 방치**하고, **의식·관행 등의 문화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아 실효성 저하**

③ 그리고, 개혁 내용도 "국민의 필요"보다는 **노·사 양측 주장**에 대한 **"타협의 결과물"**로 이뤄져, **국민 공감대 확보에 미진**

□ 정부는 **과거 경험을 교훈 삼아** 제도개선을 비롯하여 **현장의 잘못된 관행·의식 전반**을 바로잡아, 보다 **근본적인 개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음

올바른 노동문화 정착을 위한 대토론회

건강한 노조를 위한 첫걸음은 회계투명성

토론2

토론문

김상문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올바른 노동문화 정착을 위한 대토론회 토론문(국토부)

1.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황 · 문제점

□ (**불법행위**) **채용 강요·부당금품 수수, 공사 방해** 등 불법 행위는 **안전·품질** 문제를 야기함은 물론,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을 초래

□ (**구조적 문제**) **불법하도급** 등 사측의 불법행위와 그에 따른 **근로여건 악화** 등 **구조적 문제***도 건설사-근로자 간 **부당 거래**를 유발하는 요인

* 불법하도급을 통한 저임금 인력 투입, 부실시공, 안전규정 위반 등 공사비 임의 감축

◈ 그간 **적발·처벌 미흡**으로 건설현장에 **불법행위**가 **만연 → 1차 피해자**는 **건설근로자**(저임금, 안전사고), **최대 피해자**는 **일반국민**(부실시공)

2. 정부의 대응 및 성과

□ (**정부대응**)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국무회의, 2.21), 경찰청 200일 특별수사, 부처 합동 특별점검 등 **범정부 역량 집중**

<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주요내용** >

1 **불법·부당행위 점검·단속 강화**

- 관계부처 협업 강화하여 역량 집중: 단속·처벌 강화
- 공공기관, 민간협회 역할 강화: 공공기관 민·형사상 대응 선도, 민간협회 익명신고센터 운영

2 **불법·부당행위 차단·방지**

- 불법행위 즉시 대응: 관계부처와 공조하여 즉시 제재·처벌 가능한 불법행위부터 엄중 대응
- 추가적 특별조치 금품 수수 시 「국가기술자격법」 상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기계조종사 자격정지

3 **건설근로자 보호조치**

- 사업자의 부당행위로부터 근로자 보호: 불법하도급 단속 강화, 공사대금 직접지급제 확대
- 건설근로자 근무여건 개선: 화장실, 휴게실 등 편의시설 확충

○ **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후속입법** 등을 통하여 **상시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민·당·정 협의**(5.11)를 통해 「**근절대책 후속대책**」 **발표**

Ⅲ. 노조 불법행위 금지(4.3 법안 발의, 김형동 의원 노조법 개정안)

1 폭행협박 등을 통한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 방해 행위 금지

1. 소속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채용·임금 등 차별 강요

○ **(필요성)** 조합원 채용 강요, 승진 차별 등으로 **공정질서**가 **침해**되고 **다수노조**에 의한 **소수노조**(또는 비조합원) **차별 등**이 **지속**되어 이에 대한 **금지규정 신설 필요**

○ **(기대효과)** ❶**복수노조**에 따른 **노노갈등 예방**, ❷**비조합원·소수노조 권리 보호**, ❸**사용자**에 대한 **불법·부당한 요구 방지**

2. 부당한 금품 등을 요구하며 업무제공 거부·해태

○ **(필요성) 최근 건설노조 등**에서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며 **작업을 거부** 또는 **해태**하는 **상황**이 **반복되어** 이에 대한 **규율 필요**

○ **(기대효과)** 노동조합의 **불법 행위**로부터 **사용자**의 **조업권 보호**

3. 폭행·협박 등으로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 방해 금지

○ **(필요성)** 쟁의행위 기간이 아닌 때에도 노동조합 주도로 **사용자·근로자에 대한 권리 침해 및 폭행 사건**이 **다수 발생**

○ **(기대효과)** 노동조합에 의한 **사용자·근로자 권리 침해 방지**

4. 폭행·협박 등으로 위법한 단체협약 체결 강요

○ **(필요성)** 노동조합이 **소속 조합원 또는 소속 조합원 자녀** 등을 **우선 채용 하는 위법한 단체협약 등**을 체결하여 **사회적 논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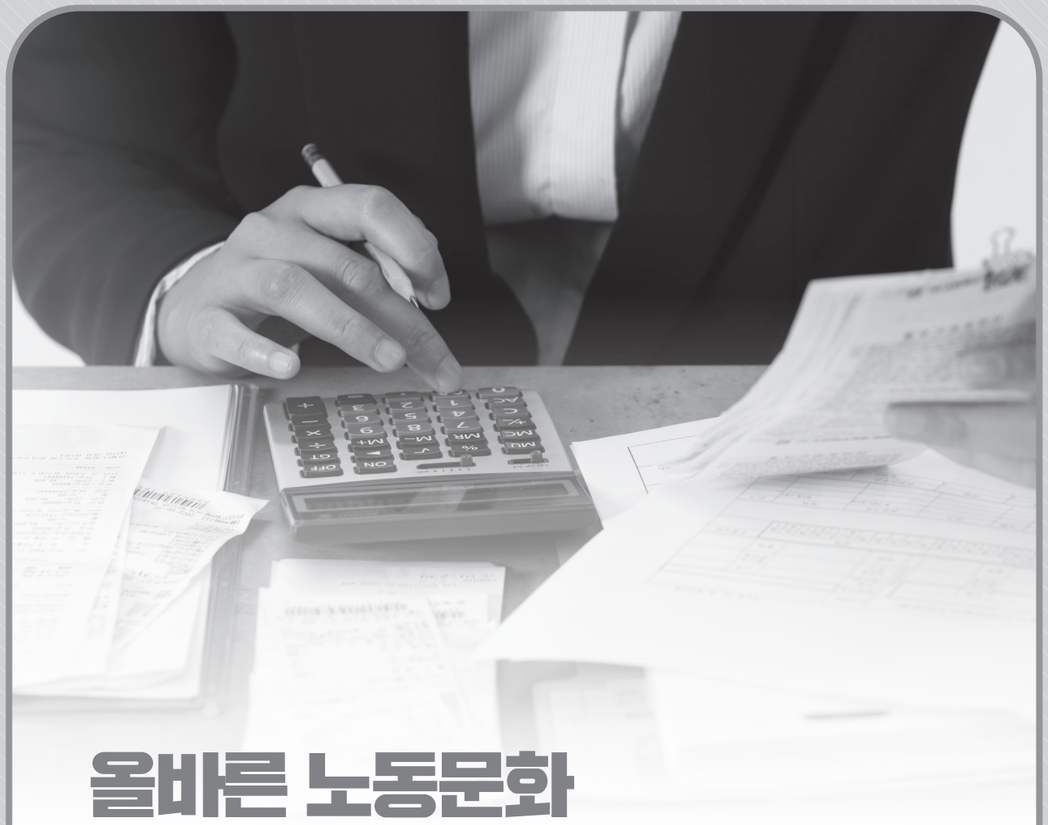

올바른 노동문화 정착을 위한 대토론회

건강한 노조를 위한 첫걸음은 회계투명성

토론3

토론문

김환주 |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영정책본부장

올바른 노동문화 정착을 위한 토론문

- 노조 회계투명성 확보 관련 -

◆ ◆

○ 일 시 : 2023. 6. 8(목) 10: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KOSCA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노조 회계투명성 확보 관련 토론문

□ 서 론

○ **현 정부는** 3대 개혁(노동, 연금, 교육) 중 **노동개혁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회계감사 전문성 확보, 회계공시시스템 구축 등 공정한 노조 운영을 위해 **건설현장**의 월례비, 불법전임비 등 **불투명한 금전**에 대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논의는 시의적절**

- 발제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해외사례**로 영국, 일본의 경우 회계감사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독일, 프랑스의 경우 노조 재정 정보를 상시 공시**토록 하고 **포괄적으로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 우리나라도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노조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정입법 발의 상태임

□ 건설노조 불법행위 실태

○ **우리 협회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총 95개사, 397개 현장**에서 건설노조 불법행위가 파악되었으며, **타워크레인 월례비**가 138건으로 **44.52%**, **노조전임비 등 강요**가 100건으로 **32.26%**의 비중을 차지하여 **불법적인 금품 수취**가 **전체 불법행위의 76.7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 **건설노조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액**은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80억원**까지 발생하였으며, **공사지연은** 최소 7일에서 **최대 180일**까지 발생된 것으로 조사됨

○ **국토교통부**가 12개 유관기관을 통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실태를 조사한 결과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국토부 실태조사**('23. 1.19, 보도자료)

- **(조사대상) 총 1,494개 현장**(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12개 기관 참여)
- **(유형별) 타워크레인 월례비**(**58.7%**, 1,215건), **노조전임비 강요**(**27.45%**, 567건)
  ☞ **불법적 금품 수취가 전체 불법행위의 86.15% 비중**
- **(피해액) 최소 600만원, 최대 50억원**
- **(공사지연) 최소 2일, 최대 120일**

○ 최근 **민·당·정의 노력**으로 **지난 2월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에 이어 **5월 후속대책**으로 **현장의 노조 불법행위는 상당부분 개선**된 상태

- **불법행위 근절이 지속가능**토록 상시적인 점검체계 구축 및 **제도개선 등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며, 특히 **노조의 불법적 금품**과 관련된 **회계투명성 확보는 반드시 필요**

□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 강화 필요성

○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중에서도 **부당한 금품 요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며, **부당금품의 대표적인 예**로는 **타워크레인 월례비, 불법 노조전임비·노조발전기금** 등이 있음

○ 불법적인 금품의 **건설노조 귀속 실태, 회계적인 처리, 사용처, 용도** 등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였으나, **사회적·국민적 요구**에 따라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특히, **현 정부는 노동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하여 노동 관련 불법·부조리 근절과 함께 **노조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 **노조 회계 투명성 관련 「2023년 고용노동부 주요 업무계획」** ('23. 1. 9 보도자료)

-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23. 3분기)
- **노동조합 자율점검기간 운영**('22.12.29~'23. 1.31)
- **노조법 개정 추진**('23. 2월, 회계감사원 독립성 및 전문성 제고) 등
- **노동단체 지원사업 전수조사**('23. 3월) 등

○ **현행 노조법**은 노조의 회계와 관련하여 △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개월마다 **회계감사를 실시**토록 하고(제25조), △ **매년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며(제26조), △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음(제27조)

- **그러나** 회계감사원의 자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보고 의무가 있어 사실상 조문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노조의 회계부정을 방지하기에 한계**가 있음

○ 이에, 노조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김형동 의원님, 하태경 의원님, 정우택 의원님, 김성원 의원님** 등이 발의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있음

- **김형동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은 △ 노조 규약에 **회계감사원 자격과 선출**에 관한 사항, **회계기준 및 결산결과 등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 **노조의 회계감사 공개의무** 및 **재정에 관한 장부 열람 허용 의무**, △ 결산보고서 등 **운영공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하태경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은 △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회계법인 등으로 **한정**하고, △ **조합원이 요청할 수 있는 감사자료의 범위를 명시**하며, △ 대기업, 공공기관 노조의 경우 매년 감사자료를 행정관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정우택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은 △ 회계법인 등의 **외부감사 의무화**, △ 회계감사원 자격을 공인회계사로 한정, △ 조합원이 요청할 수 있는 감사자료의 범위 명시, △ 대기업, 공공기관 노조의 경우 매년 감사자료를 행정관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고있음

- **김성원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은 △ 회계감사원의 자격기준 및 선출절차와 △ **조합원의 노조에 대한 회계감사 요구권, 요구 서류 범위, 서류 보존기간을 규정**하고, △ 대기업, 공공기관 노조는 매년 감사자료를 행정관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고 있음

○ 4개 법안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나 **주로 △ 회계감사원 자격 강화, △ 조합원의 감사 요구권 확대,** △ 일정한 노조의 경우 행정관청 보고 의무화를 통해 **노동조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은 의미**가 있음

○ **노조의 회계투명성**은 **건설노조의 경우에도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며, 특히 그간 현장에 만연했던 **월례비, 불법 노조전임비 등 부당금품**과 **정부 보조금 및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조합비 등 관련한 회계에 대해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더욱이, **건설노조는 산별노조**로서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으로 **조직구조가 방대하고 조합원이 광범위**함에 따라 **회계투명성 강화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조합비를 납부하는 조합원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투명한 공개 필요**

- **고용노동부는** 지난 2. 1일부터 **노조에 대해** 노조법상 **회계·재정에 관한 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자율점검하고 2.15일까지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보고토록 하였으나, **미보고한 노조**(총 52개)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음('23. 4. 9 보도자료)

- **미보고한 노조의 비중**은 기업노조에 비해 **산별노조가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이는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같은 **대규모 노조가 지침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요구를 조직적으로 거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회계 불투명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음

○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법안**은 **조합원이나 정부에 대한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이나, **전국적인 대규모 노조, 산업별 노조의 경우 대국민 회계 투명성 강화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임

○ 아울러, 노조 회계투명성 이외에도 **합법적인 노조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건설현장에 난립한 무허가 및 군소 불법노조**가 현장 개설시 채용강요, 현장집회를 하지 않는 대신 **불법적인 노조전임비, 노조발전기금 등을 요구하는 관행이 만연해 있었음**

- 건설사업자가 **노조와 합법적인 협의**를 하기 위해 **해당 노조가 적법한지 여부를 먼저 파악해야** 하나, **적법하게 인가된 노조인지 여부조차도 알지 못해 불법노조에게도 전임비 등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

※ **고용노동부는** 적법노조 파악을 위한 **노조 현황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개인정보를 이유로 **정보공개 불가 입장**

- 따라서, **노동조합법상** 건설사업자가 **교섭대상의 합법노조 여부 파악 및 적법교섭 가능**토록 **고**용노동부의 정기적인 **노조 설립인가 명단 공개 의무를 규정하는 것을 검토해야함**(법 제12조 개정)

○ 지난 **5.11 발표**된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에 따르면 **건설산업 공정화**를 위해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을 **확대**하는 등 사업주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건설노조의 회계·명단 등 현황에 대한 투명성도 확보될 필요**가 있음

* **<전자카드제>**
(현재) 공공 50억 이상, 민간 100억 이상 → **('24년부터)** 공공 1억 이상, 민간 50억 이상(건설근로자법 시행령 旣개정)

** **<대금지급시스템>**
(현재) 공공 3천만원, 30일 초과시 적용, 민간 공사 인센티브(하도급대금 지급보증료 감면, 상호협력평가 가점)
→ **('24년 하반기)** 민간 300억 이상, **('25년 하반기)** 민간 100억 이상, **('26년 하반기)** 민간 50억 이상 의무 확대(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

□ 마무리

○ 건설사업자들은 **건설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노조**와의 **상생**과 **합법적인 건설현장 운영**이 **반드시 필요**

○ 다단계 하도급을 하는 **일부 건설사업자**와 **월례비, 부당한 노조전임비 등을 요구하고 불투명한 회계를 운영**하는 **일부 건설노조** 등 **노·사 모두 자정노력**을 하여야 하며,

○ **노·사의 노력**과 더불어 **정부가** 건설근로자의 **노동권 보호**와 **건전한 노조활동**을 위해 **건설노조의 불법적인 회계**를 **법에 따라 적정 수준으로 규율**하는 것이 올바른 노동문화 정착을 앞당기는 지름길

○ 오늘 논의되는 다양한 개선 방안들이 조속한 이행이나 법제화로 이어지고 **정부, 건설사업자 및 노조의 노력과 함께** 앞서 발제된 **해외 제도와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국가 차원에서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주시길 바라며, 오늘 참석하신 여러 **전문가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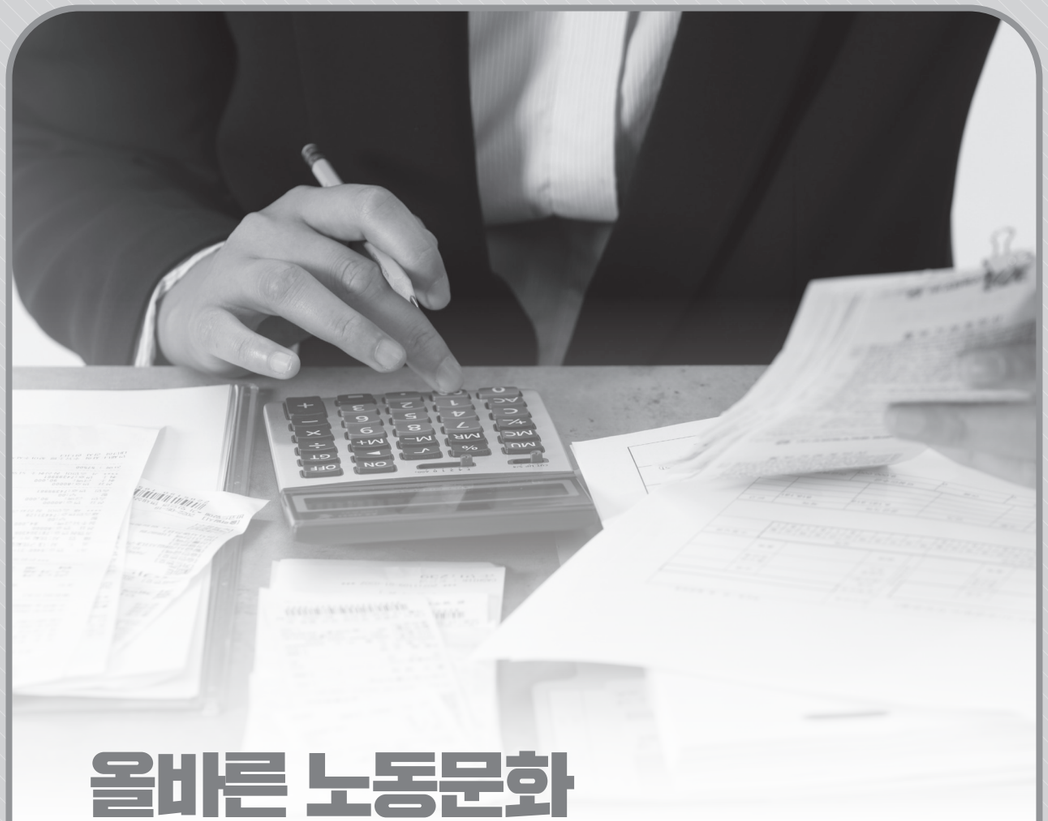

올바른 노동문화 정착을 위한 대토론회

건강한 노조를 위한 첫걸음은 회계투명성

토론 4

건설노조 불법행위 대응과 회계투명성 강화 필요

윤성만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1.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유형화하고 이러한 대응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는 박박사님의 발제였음

- 건설현장에서의 불법 채용강요와 이에 대한 실효성있는 제재가 어렵고
- 건설기계의 독점적 지위를 활용한 운송거부, 불법ㆍ부당한 월례비 요구와 일방적인 단가인상은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음
- 더구나 이러한 행위는 고스란히 건축물의 매수자이자 수요자인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을 작용한다는 점이 사회적 수용성을 저해한다고 생각됨

2. 이번 발제의 또 하나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조합 회계의 불투명성”은 조합원의 권리, 더 나아가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훼손시키는 사회적인 이슈라고 할 수 있음

- 물론 건설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높인다고 해서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건설노조의 회계투명성을 강화시킴으로써 조합원 및 국민에게 최소한의 도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됨
- 일반적으로 재무보고는 책임과 권한을 맡긴 위탁자에 대한 수탁자의 최소한의 책임인 수탁책임성이라는 스튜어드십(stewardship)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재무보고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투명성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노동조합원이나 국가보조금을 지급한 정부에게 이러한 재무보고 자체를 하지 않는 노동조합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동안 정부나 국민, 조합원에 대한 노동조합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특히 이러한 노동조합의 회계실태를 지금까지 방관하고 묵인하였던 정부나 조합원에게도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최근 소규모 국고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단체, 일정수준의 기부금단체 그리고 소규모의 아파트 관리비 조차도 고품질, 고강도의 회계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만명의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비를 납부받고, 정부로부터 고객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노동조합의 고유한 역할과 행위를 정당화하는데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함
- 즉, 아무리 노동조합이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 지위와 존엄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순수한 기능을 한다하더라도, 회계투명성이 없는 단체는 모든 행위가 정당화되기는 어렵다고 생각됨

3. 최근 정부에서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각종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화가 되어 있음

-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하고, 회계공시 이행 노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조합원의 정보요구권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발표한 바 있음
- 그리고 해외 주요국들도 대부분 노동조합에 대한 고도의 회계투명성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자의 권리나 노조가 우리나라보다 활성화되고 선진화되어 있는 독일이나 프랑스도 상시 회계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포괄적인 업무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회계투명성 수준을 높이고 있음
- 이러한 국제적으로도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 수준을 높고, 이 수준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강제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노조도 회계투명성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4.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는 인센티브와 제재의 균형과 점진적인 단계로 개선되어야 함

- 지금까지 노동조합의 회계에 대한 조합원, 국민 및 정부의 인식이 높지 않아 무관심한 영역이었다고 생각됨. 이러한 회계투명성을 하루 아침에 높이려는 것은 노동조합 경영진이나 회계시스템의 수용성에 어려움이 클 수 있음
- 지난 23일 우리 정부는 노동행정종합정보망인 노동행정포털에 회계공시 시스템을 9월부터 운영하겠다고 하고, 여기에 기부금 단체와 같이, 1천명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노조가 회계공시를 할 경우,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 이처럼,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센티브와 제재가 균형있게 제공되어야 하고, 중기적인 관점에서 회계기준, 회계감사 및 공시 등에 관한 제도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또한 노동조합 입장에서도 회계가 조합원, 국민 및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그 책임을 다하여야 노동조합의 고유의 역할과 행위에 정당성을 한 단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주었으면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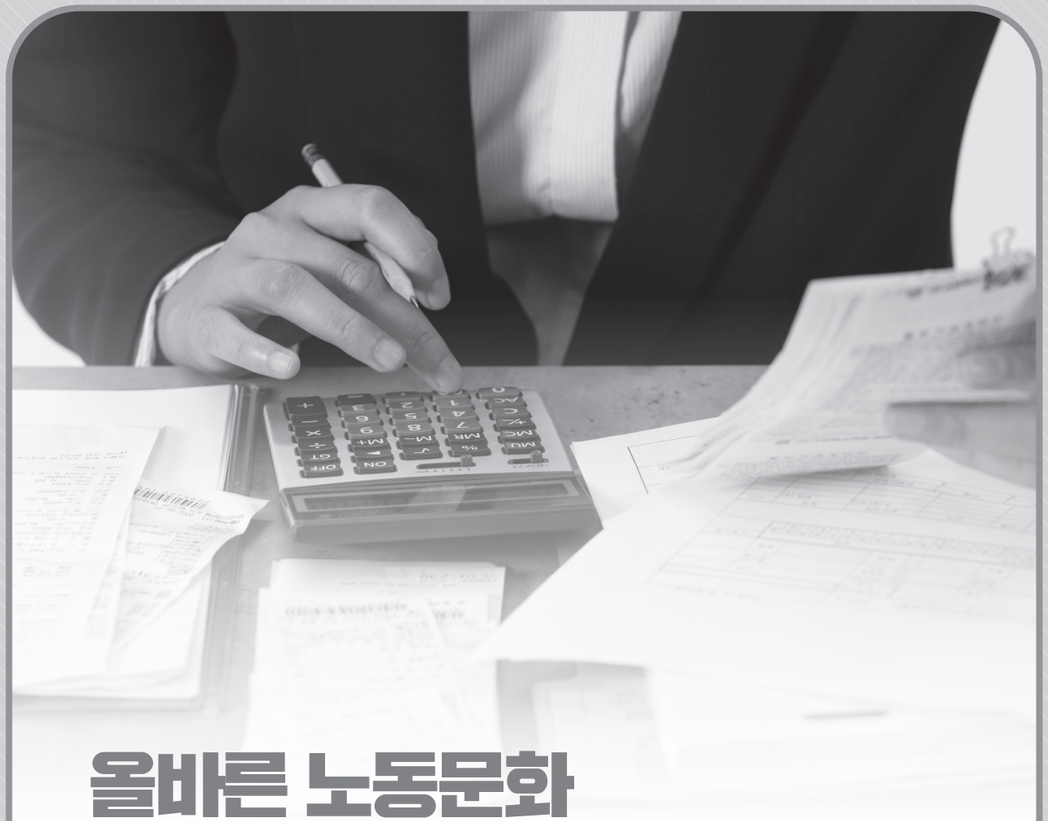

올바른 노동문화 정착을 위한 대토론회

건강한 노조를 위한 첫걸음은 회계투명성

토론 5

건설노조 불법행위 대응과 회계투명성 강화 필요성

최자광 | 한길회계법인 대표회계사

발표자는 노동현장의 불법행위 사례와 제도개선, 회계투명성 강화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발표자는 특히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회계투명성을 제시해 주셨는데,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로 생각됩니다.

회계투명성을 논할 때 흔히 국제경영개발원(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IMD)에서 발표하는 국제 회계투명성 순위를 제시합니다. IMD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연도별 회계투명성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회계투명성순위	63	62	61	46	37	53

외부감사인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외감법의 도입 이후 순위가 개선되었다가 최근 대규모 횡령사태 등이 발생한 결과 악화되어, 중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회계투명성은 회계기준의 적용, 회계감사의 강화, 공시의 강화를 통해 달성된다고 봅니다. 이하에서는 회계투명성을 강화해야 하는 당위성과 기대효과, 그리고 건설노조의 회계투명성 강화방안에 대하여 같이 생각해 볼 몇 가지 문제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회계투명성 강화의 당위성과 기대효과

가. 회계투명성 강화의 당위성

투명한 회계정보는 경제주체 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함으로써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제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나라 회계투명

성이 낮은 주요 원인이 오스템임플란트 등 대규모 분식 또는 횡령사건의 지속적인 발생과 외부감사인 등 감시기구의 역할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한편, 연구결과에 의하면 사회 구성원은 회계투명성과 사회투명성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1)]

나. 회계투명성 강화의 기대효과

회계투명성은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 및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시장유동성, 자본비용, 경영 및 투자의사결정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회계투명성이 간접적으로 국가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이 저평가 되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이유 중 하나도 회계투명성 부족에 있다고 봅니다.[2)]

그런데 국가경쟁력은 어느 한 분야의 회계투명성 만으로 달성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설노조의 회계투명성은 사회전반의 투명성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손혁 · 강순경 · 백태영, "회계지식의 수준에 따른 회계투명성 인식", 「KBR」 26(1), 2022, p.200.
2) 곽수근 등(2010)은 국제회계기준의 시행으로 우리나라의 IMD 및 WEF 회계투명성 국제 평가순위가 상승하고, 이로 인해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 문제가 해소될 경우 자기 자본비용(0.32~0.66% 감소)과 타인 자본비용(18.71~38.99bp 감소) 감소, 주식시장규모(17~38조원 증가) 확대 등 유의미한 수준의 국가경쟁력 제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하였다(심호식 · 이우종 · 이재경 · 한승엽, "회계투명성의 국가 간 비교 및 자본비용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실증연구: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회계 · 세무와 감사연구」 58(2), 2016, p.45. 재인용).

2. 건설노조의 회계투명성 강화방안

가. 회계기준의 적용과 인력 확보

회계기준은 회계정보작성자를 규율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은 한국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있습니다. 특수한 영역에서는 공익법인회계기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등이 있습니다. 건설노조의 경우에는 회계가 복잡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으므로, 적용 회계기준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히려, 회계처리를 실행하고 담당할 인력의 확보가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교육훈련이 필요하거나 훈련된 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건설노조의 저항을 완화할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나. 회계감사의 강화

회계감사는 회계정보작성자의 자의적인 회계처리를 방지하여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게 됩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외부감사의 체계화를 위해서는 (1)외부감사대상의 정립, (2)회계감사기준 등 인증기준의 체계화, (3)외부감사인 등의 선임방법 개선, (4)외부감사의 성격 명확화 및 (5)외부감사의 품질관리제도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3)]

3) 김완희 · 남혜정 · 전규안 · 정창모 · 송옥렬, "비영리법인의 투명성 제고와 회계의 역할", 「회계저널」 22(3), 2013, p.186.

회계감사의 강화와 관련하여 실무적으로는 세 가지 차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외부감사의 의무화를 생각할 수 있고, 둘째는 외부감사의 독립성 확보차원에서 감사인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회계감사비용의 수준과 부담주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공시의 강화 및 장부열람권의 부여

공시의 강화와 장부열람권의 부여는 회계정보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하게 됩니다. 회계투명성의 확보를 위하여 공시를 강화하고 접근성을 개선하며, 장부열람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계정보비대칭을 줄이기 위해 시행할 수 있는 제도로 봅니다.